



의료감정제도 및 검증제도 개선방안

2023. 9.

재판제도분과위원회

I.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요약

1.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가. 전반적 논의 경과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의료감정제도의 개선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해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4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됨.
- 의료감정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현행 법령과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이하 '감정예규'라 함), 실무상 운영형태 및 외국의 의료감정제도를 살피고,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등을 분석함. 현행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① 감정절차의 지연과 ② 감정 결과의 충실성, 공정성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결과 응답한 법관 및 변호사 대부분이 공감함(법관 중 99.1%, 변호사 중 98.1%, 응답자 기준, 이하 같음).
-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 '법원 신체감정등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대한 의료법학회와 법원의 의료법분야연구회 커뮤니티에서 2022. 12. 10. 공동 개최한 '법원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동세미나(이하 '공동세미나'라고 하면 이 세미나를 의미함)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함.
- 제안되거나 언급되는 개선방안 등이 매우 다양하여 감정절차의 지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도 결과의 충실성 등이 담보될 실효성 있어 보이는



개선방안을 추출하여, ① 단기개선방안으로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인 풀 확대, 감정료 개선, 기타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② 중장기개선방안으로 (가칭)감정위원회 설치, 감정축탁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함.

나. 단기개선방안 논의 내용과 결론

■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인 풀 확대방안 논의 내용

- 현행 감정예규가 의료감정을 원칙적으로 감정축탁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면서(제14조 제1항),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이하 ‘3차 병원’이라 함)” 및 그 소속 의사들로 한정된 것(제6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고, 설문조사결과도 응답한 법관(78.6%) 및 변호사(86.7%) 중 각 과반이 공감함.
- 확대방법으로, ① 감정축탁기관을 “병원(의원 제외), 치과병원(치과의원 제외), 전문병원(이하 ‘2차 병원’이라 함)”까지 확대하고, ② 감정축탁기관이 아닌 감정인으로 “퇴직한 교수 등 개별의사”를 별도로 관리하되, 의사의 자격(감정축탁기관인 경우 그 소속 의사)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로 제한하는 것을 논의함.
- 다만 확대된 풀에 따른 감정축탁기관 또는 감정인을 선정할 것인지에 관해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른 무작위 선정을 위해 기존 명단과 이에 따라 확대되는 명단을 각각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위와 같이 확대하는 것에 위원들은 찬성함(11명 중 10명 출석, 9명 찬성, 1명은 위 확대방법 중 ①은 찬성, ②는 신중 검토 의견). 설문조사결과도 응답한 법관(①은 83.9%, ②는 74.3%) 및 변호사(①은 87.7%, ②는 77.8%) 중 각 과반이 공감함(구체적 결과는 별지2, 별지3. 참조).

■ 감정료 개선방안 논의 내용



- 현행 감정예규에서 정한 의료감정 감정료(과목당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 다만 재량증액 가능, 제39조 제1, 2항)가 다른 감정과 비교하여 감정료가 저렴한 등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고, 설문조사결과도 응답한 법관(93.2%) 및 변호사(64.8%) 중 각 과반이 공감함.
- 감정료의 개선으로, 단순히 감정료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질의사항을 줄이는 등 감정사항을 정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감정절차의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정사항의 질의문항 수에 따라 감정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방식에 대해 위원들은 찬성함(11명 중 출석 위원 10명 전원 찬성). 설문조사결과도 응답한 법관(84.7%) 및 변호사(72.7%) 중 각 과반이 공감함.
- 구체적인 부과방식으로, ① 기준문항에 기본감정료를 정하고, ② 질의문항 수가 기준문항 수를 초과하여 60문항까지 될 경우 문항당 초과감정료를 정하여 초과되는 질의문항 수에 비례한 초과감정료를 기본감정료에 가산하며, ③ 질의문항 수가 60문항을 초과할 경우 61문항부터는 질의문항 수에 비례하여 가산되는 문항당 초과감정료의 액수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함.
- 설문조사결과, ①의 기준문항 수를 20문항, 기본감정료를 현행대로 하는 것에 관해 응답한 법관과 변호사의 의견이 상이함[법관 중 과반(55.7%)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변호사 중 과반(63.5%)은 적절하다는 의견]. ②의 초과감정료 액수(1만 원~5만 원)에 관해 법관과 변호사의 의견이 상이함[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법관은 5만 원, 3만 원, 2만 원, 4만 원, 1만 원, 변호사는 2만 원, 3만 원, 1만 원, 5만 원, 4만 원]. ③과 같이 초과감정료를 더 증액하는 것에 법관(63.5%)과 변호사(61.9%) 중 각 과반이 적절 의견임.
- 설문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① 기준문항을 20문항, 기본감정료를 현행대로 과목당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으로 하고, ② 21문항부터 60문항까지는 질의문항 수에 비례하여 문항당 3만 원씩 가산하며, ③ 61문항부터는 문항당 5만 원씩 가산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은 찬성함(11명 중 출석 10명, 9명 찬성, 1명 찬·부 의견 없음).



■ 기타 세부적인 단기개선방안

- 신체감정촉탁서에 신체감정료와 별도로 병원에서 지출한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의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서면으로 위원들 의견 조회하여 응답자 7명 중 6명 찬성)
- 감정촉탁서에 감정서 회신기한을 명시하는 방안(서면으로 위원들 의견 조회하여 응답자 7명 중 5명 찬성)
- 감정촉탁서 접수통지 양식을 마련하여 감정촉탁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어 감정촉탁서를 받은 병원에서 접수하여 진행할 것인지를 법원에 알리게 하는 방안(서면으로 위원들 의견 조회하여 응답자 7명 중 6명 찬성)

■ 결론

- 위원회는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을 확대하여, 현행 감정예규상 의료감정을 원칙적으로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하면서 감정촉탁기관을 3차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 ① 감정촉탁기관을 2차 병원(다만 3차 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소속된 병원)까지 확대하고, ② 감정인으로 의사 개인(다만 3차 병원에서 수련기관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을 추가하여 각각의 명단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당사자들이 명단을 선택하게끔 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감정료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현행 감정예규상 금액을 정한 후 재량 가감의 가능성만 정한 것에서, 질의문항 수에 따라 감정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① 기준문항 수 20문항에 기본감정료를 과목당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으로 정하고, ② 21문항부터 60문항까지는 추가되는 질의문항 수에 비례하여 문항당 3만 원씩 초과감정료를 가산하며, ③ 61문항부터는 추가되는 질의문항 수에 비례하여 문항당 5만 원씩 초과감정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부수적으로, ① 신체감정촉탁서에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의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양식 개선, ② 감정촉탁서에 회신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양식 개선, ③ 감정촉탁서 접



수통지서 양식을 만들어 감정촉탁서와 함께 감정촉탁기관에 송달하는 방안의 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다. 중장기개선방안 논의 내용과 결론

■ (가칭)감정위원회 설치방안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을 감정절차의 스키텐터로서 관여하는 안'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추가 검토하고, 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 2018년경 법원행정처에서 검토된 감정센터 설치방안, 공동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참조하여 검토·논의함.
-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임상현장의 병원 및 의사들과 교류, 소통할 수 있는 법원측 청구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의 시작임.
- 설치방안의 골자는, 대법원 소속 또는 대법원 산하 조직으로 현재의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같은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를 다수(약 20여 명) 선발하여 (가칭)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회를 총괄할 법관 1인 등 필요), 모든 의료감정을 감정촉탁의 방식으로 (가칭)감정위원회에 의뢰하면, (가칭)감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거나 외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의뢰하여 감정을 하되, 감정서는 감정위원회 명칭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초기에 그 방향성에 관해 위원들 다수가 찬성함(서면 질의 응답자 8명 중 7명 찬성). 다만 설치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는 물리적, 인적,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특히 의사 측의 의견이 필요함), 전체적인 방향성, 필요성에 대해서만 공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의료소송 및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 전문 법관, 의사 등 의료인,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별도 TF 등을 구성하여 계속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에 위원들이 찬성함(11명 중 10명 찬성).

■ 감정촉탁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방안

-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의들과 법원 사이 소통 부족이 감정절차의 지연 등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고, 감정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의 협조,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감정촉탁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임.

- 그런데 간담회를 법원행정처에서 전국의 감정촉탁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자문회의에서 의결할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 등으로 추가 논의는 하지 않음.
- 다만 각급 법원에 그 소속 감정촉탁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권장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에 위원들이 찬성함(11명 중 10명 출석, 9명 찬성).

■ 결론

- (가칭)감정위원회와 같은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의료인)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 또는 인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의료인이 참여하는 별도 TF 등을 구성하여 계속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함.
- 각급 법원에 감정촉탁기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권장하고 간담회 개최 시 법원행정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2. 현장검증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 논의 경과

- 현장검증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증거조사 방법임에도 최근 현장검증의 실시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부각된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
- 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 원격 영상검증 도입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까지는 반영되



지 않음

- 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 특히 민사소송비용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
- 이에 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는 검증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검증여비 현실화 방안과 원격 영상 검증, 드론을 활용한 사진촬영 방식의 검증 실시 등 검증 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현장검증 감소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법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 결론

-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입체적 사진이나 동영상, 위성지도 등의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비율이 63.4%, 현장검증 비용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감비율이 87.3%, 현장검증 비용 증액이 현장검증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비율 또한 73.8% 도출
- 현장검증에 장치를 통한 영상검증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4.7%, 현장검증 실시에 카메라나 드론, 담당인력 등 인적, 물적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68.8%로 도출
-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 및 현행 검증여비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장검증을 시행하는 경우, 법원 밖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현장방문 및 조사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법관 및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데 그에 비해 현행 지침에 따른 현장검증여비가 적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위원 11명 9명이 동의
- 다만, 검토된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모두 문제점이 존재하여 그중 하나의 방안을 정해 추진하는 내용의 의결은 하지 않기로 함
-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검증 대상 전체를 상공에서



촬영하여 정확하면서도 쉽게 실체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드론장비 구입 및 관련 인력 배치를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함

II.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의 검토대상, 논의 배경

1. 의료감정의 정의와 용어 정리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2022. 3. 16. 재판예규 제1801호로 개정, 이하 '감정예규'라 함)의 관계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과 같다.

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등'이라 한다)

- 의료분야 전문가(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의사로 하여금 당사자(환자)를 진찰, 진단하여 건강상태 등에 관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 각종 검사 영상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수준, 인과관계 등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것
- 감정예규는 제1장 총칙에서 신체감정, 진료감정을 통틀어 '신체감정등'이라고 표현하고, 제2장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침에서 감정을 크게 '신체감정등 이외의 감정(시가등 감정, 측량감정, 문서등 감정, 공사비등 감정 등)'과 '신체감정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이하에서는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합쳐 <의료감정>이라고 칭하여 함께 논의하고, 시가감정, 측량감정, 공사비등 감정과 같은 신체감정등 이외의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칭함.

2. 의료감정이 필요한 소송

- **민사소송**

- 의료감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사건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되는 의료소송[손해배상(의) 사건]으로 진료기록감정은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신체감정도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됨. 또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사건 등]의 경우도 신체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그 외 보험금청구소송(자살로 사망한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장애의 정도 등)이나 당사자의 의사능력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등 다른 일반소송에서도 의료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음.

■ 기타 소송

- 행정소송에서 유족급여, 장애급여, 요양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인과관계, 기왕증, 장애정도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과실의 존부, 상해죄에서 상해사실의 존부 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음. 특히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하더라도(수사기관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음), 공판절차에서 다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검토범위

- 위와 같이 의료감정은 여러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의료감정이 주로 활용되는 민사소송(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기타 소송 포함)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함.

3. 의료감정제도 개선의 논의 배경

- 의료과실이나 신체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등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감정은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청구를 한 당사자인 주로 환자, 피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함.
- 그런데 감정신청을 하여도 감정기관의 별다른 이유 없는 감정촉탁서의 반송,



회신 지연 등으로 일반 다른 소송보다 감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감정의가 감정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하지 않거나 매우 간략하게 결론만 밝히거나 후속 사실조회 등에 답변하지 않는 등 감정의 부실과 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정촉탁기관이나 감정의의 공정성, 편파성 등이 문제됨.

- 이로 인해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었고, 일부 절차가 개선되거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뚜렷한 개선 없이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유지, 시행되어 오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의료감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감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감정의 공정성, 충실성 등을 높임으로써 사실심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재판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III. 현행 의료감정제도 관계 규정과 실무

1. 관계 규정

■ 민사소송법

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 준용 규정 : 제319조 선서의 의무

제334조(감정의무)

-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 ②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제337조(기피의 절차) : 생략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 참조 : 형사소송법 제154조 허위감정죄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①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2016. 3. 29. 신설]

-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2016. 3. 29. 신설]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제341조(감정의 촉탁)

- 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 감정예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 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3. 5. 시가등의 감정, 추량감정, 문서등의 감정, 공사비등의 감정
 - 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등’ 이라 한다)
- ② 제1항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전산양식 A1780-1]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 법원의 부는 각각 본원 및 해당 지방법원의 다음 각호의 명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다음 각호의 명단은 거리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신체감정등 이외의 감정분야별 『감정인 명단』 (다음부터 ‘『감정인 명단』’ 이라 한다)
2.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④ 시·군법원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군법원에서 감정인등을 선정하고 지정할 때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시·군법원이 속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작성한 『감정인 명단』 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기일 전 감정신청)

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전형적으로 감정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당사자가 필요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감정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감정서 등 제출)

-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감정인등은 감정서, 감정보완서 등 감정관련 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담당 재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제1절 통칙

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

- ①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 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의2 (결격사유) : 내용 생략

제5조(감정인 명단) : 내용 생략 ⇨ 의료감정(신체감정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제6조 (신체감정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31.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감정촉탁기관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작성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15.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추천 요청 시에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자문의, 근로복지공단의 촉탁의 등)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신체감정등

제14조 (신체감정등의 방법)



- ① 신체감정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축탁의 방법에 의한다.
- ② 재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감정의 취지와 재감정 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등)

- ① 신체감정등에서 감정축탁기관 및 주과목, 보조과목 담당의사의 선정은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한다. 다만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주지 관할법원의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 ② 신체감정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0조 제2항, 제4항 및 제11조, 제12조를 신체감정등에 각 준용한다.

제16조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의 조정)

- ① 『감정 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병원이나 담당의사 또는 감정축탁을 받은 병원이나 담당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전산양식 A1799-1]에 의하여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축탁을 받은 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축탁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축탁을 받은 기관이나 담당의사의 감정축탁회신 또는 그에 첨부된 감정서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감정축탁을 받은 기관의 감정신청인에 대한 비용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기관이나 의사에게 감정축탁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② 제1항의 보고가 있어 해당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해당 의사에게 부적합 사유를 기재한 삭제예고통지서 [전산양식 A1802]를 보낸다. 위 통지서를 받은 의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예고통지에 관한 의견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의견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의사를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서 삭제한다.
- ④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제3항에 따라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서 삭제를 한 경우에 즉시 해당 기관 및 담당의사에게 삭제통지서 [전산양식 A1803]를 보낸다.
- ⑤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담당 의사가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감정 업무의 일시중지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한 경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해당 사실을 입력한다.

제5장 신체감정등에 관한 특칙

제22조 (감정신청 및 감정축탁방법 등)

- ① 신체감정등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진료 기록감정의 경우에는 2호 및 3호의 자료는 첨부할 필요 없음).
 1.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 X-RAY·MRI·CT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 소견서 등) 사본
 2. 건강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정신건강의학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 ② 신청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감정대상자로 하여금 진료기록송부 축탁신청서(또는 축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여 위 신청서(또는 축탁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치료병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한다.

- ③ 신체감정등이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의 상대방(피고측 보험회사 등)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 ④ 법원은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담당자가 선정되면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감정촉탁기관에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의뢰한다.
- ⑤ 송부촉탁한 후에 당사자가 제1항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위 자료를 감정촉탁기관에 송부한다.

제23조 (신체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

- ①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정촉탁기관이 감정과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 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진료기록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

진료기록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3조를 준용한다.

제7장 감정료의 산정 등
제1절 통칙

제26조 (감정료의 증액 요청)

감정인등은 이 예규가 정하는 감정료만으로는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하기 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원에 감정료의 증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판장의 재량)

재판장은 지정한 회신기간이 경과하거나 감정인 신문기일 또는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정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분의 2 이내에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제28조 (소취하 등의 경우의 감정료) : 생략

제2절 감정료 기준

(제1관~제3관, 제5관의 개요)

- 제1관 측량감정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 등 + 자료수집비 실비
- 제2관 시가등의 감정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정한 평가수수료의 일정비율 등 + 자료수집비 실비 + 여비(민사소송비용규칙) / 총감정료 하한 290,000원, 상한 7,200,000원
- 제3관 문서등의 감정 : 기본 1건 350,000원, 추가 1개당 140,000원 + 여비
- 제5관 공사비등의 감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중 감정에 관한 업무의 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산출된 금액 등 + 여비

제4관 신체감정등

제39조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 ①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400,000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 ② 진료기록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600,000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 ③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증액할 수 있다.

제3절 감정료의 예납 및 지급

제42조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의 제출)

- ①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개략적인 감정사항 및 감정목적물을 알려주고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로 하여금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감정료의 예납)

재판장은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료의 예납액을 정한다.

제44조 (감정료의 결정)

- ① 감정인등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인등의 감정절차 협조 정도,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료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한다.
- ⑤ 재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감정료의 지급)

제46조 (감정인등 평정)

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경매사건에서의 시가등의 감정의 경우에는 담당 사법보좌관)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평정표 [전산양식 A180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감정등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감정인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한다.

제8장 특수분야 전문가

제47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특수분야 전문가(제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특수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한다.

2. 현재 감정촉탁기관 등

-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이하 ‘감정의’라 함) 명단(이하 ‘감정기관등 명단’이라 함)에 등재된 병원(이하 ‘감정병원’이라 함)과 소속 의사



-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3. 31.까지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로부터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받아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작성함(감정예규 제6조).
- 2022년도 감정기관등 명단에 신체감정의 경우 총 68개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전체 1,097명의 의사가,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총 63개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전체 1,147명의 의사가 감정의로 등재되어 있음.
- 감정예규는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에 관해 다른 감정에서 감정인들을 등재한 <감정인 명단>과 의료감정에서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등재한 명단(감정기관등 명단)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특수분야 전문가를 정한 마지막 장에 <특수분야 전문가명단>을 규정함. 이를 반영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웹)감정인(통·번역인) 폴더 내 [100. 선정] 부분에 <일반감정인 선정>, <신체/진료기록감정인 선정>, <공사비등감정인 선정>, <특수감정인 선정>으로 구분되어있음.
- 그중 <WG 1102 신체/진료기록감정인선정> 부분에 감정병원과 각 병원마다 소속된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이 등재되어 있음. 감정과목은 크게 14과목(내과, 외과, 소아관련,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기타)이나 각 과목별로 세부과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음.

▣ 기타 의료감정이 많이 의뢰되는 기관

- 법원에서 관리하는 감정기관등 명단에 등재된 병원 외에 의료감정이 많이 의뢰되는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음.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 종전에도 감정 업무를 하였으나, 2019년 9월 그 산하 공식적인 감정기구로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여 소속된 26개 전문학회에 감정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운영됨.

- 절차: 의료감정 접수(사무처) → 감정심의 대상·범위 해당 여부 검토 및 감정의뢰(의료감정심의위원회) → 감정료 산정 통보 → 해당 전문위원회에 감정의뢰(전문위원회는 소속된 각 학회 내에 위치하며 감정위원 선정, 감정 의견 취합 및 평가, 감정심의 결과 보고 등 감정 실무 담당, 전문성 및 복합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감정의뢰 가능) → 감정 → 감정서 회신
- ‘진료기록감정’만 시행하고, 신체감정은 하지 않음. 다만 형식만 진료기록감정으로 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신체감정 시 필요한 내용을 질의하더라도 접수함(환자를 직접 진찰·관찰을 해야 하는 경우 의뢰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현재 법원 전산프로그램의 <특수감정인선정> 부분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이 신설되면서 설립됨.
- 의료분쟁조정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여 법원, 검·경찰, 공공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해 수탁감정을 하고 있음(제25조 제3항 제4호).
-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만 시행함. 현재 법원 전산프로그램의 명단에 등재되지 않음.

3. 현재 의료감정 절차의 실무

▣ 감정촉탁의 방법 이용

- 민사소송법상 감정진술은 서면(감정서)뿐 아니라, 말로써도 가능하고, 선서를 시킨 후 감정을 명하는 감정인신문뿐 아니라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제출한 후 보충진술을 하는 감정인신문(제339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제339조의3), 감정증인(제340조, 감정의 일종임)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의료감정뿐 아니라 다른 감정도 서면으로 감정서 제출을 하



는 방식이 널리 활용됨.

- 특히 의료감정은 감정예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제14조 제1항)’고 정하고 있어서 ① 감정인신문을 하여 선서를 시킨 후 감정서 제출을 명하는 방법이 아닌 ②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음. 이는 의사 개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을 명할 경우 감정인 선서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됨.¹⁾

※ 참고판례 : 자연인인 감정인에게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선서 없이 진행하는 것은 감정절차가 위법하여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이후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도 위 판결을 원용하면서 다만 그 감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감정촉탁은 자연인이 아닌 ‘단체 등’에만 가능(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 그런데 의료감정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단체)에 ‘감정촉탁’을 하면서도 그 병원뿐만이 아닌 병원 내 소속 의사 명단을 함께 관리하면서 ‘병원(단체)’과 ‘그 병원 소속 의사’를 함께 선정하여 감정촉탁을 하고 있고, 감정서도 ‘소속 의사’ 명의로 제출되고 있어서, 단체 등에 감정촉탁을 하는 통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 감정을 담당할 의사까지 선정하여 감정촉탁을 하고, 감정서도 의사 명의로 제출되어서 오인되기도 하나, 감정서를 제출한 의사는 엄밀히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은 아님.

■ 감정촉탁의 절차 등

- 감정신청서 제출 : 기일 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감정예규 제3조 참조).
- 감정신청의 채부결정 : 채부 결정 전 감정사항의 검토, 수정, 보완 등 및 감정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기일을 진행하거나 보정명령, 석명준비명령 등을 활용하기도 함. 또한 채부 결정 전 의견요청서를 보내어 감정 채부, 감정촉탁기관 선정 등에 관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도 하나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님(감정예규 제22조 제3항은 상대방에게 고지하게만 되어있음).

1) 의료재판실무편람, 2014년 개정판



- 감정축탁기관과 감정의 또는 감정축탁기관 선정 :
 - 재판사무시스템의 <신체/진료기록감정인> 탭에서 감정구분, 당사자구분 등 사유를 입력하고, 감정과목(세부과목)을 선택하면 무작위로 감정을 축탁할 병원과 그 병원 소속 의사가 동시에 선정됨. 만일 특정병원으로 지정하려면 직접 병원명 등을 입력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함. 이때 감정과목은 14개 과목 내 각 세부과목별로 구분되어있어서 세부과목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선정이 되지 않음.
 -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또는 일방이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 등에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감정예규 제4조 제1항 단서 참조), <특수감정인선정> 화면에서 또는 일반 축탁서 출력 화면에서 축탁서를 편집하여 감정축탁서를 작성함.
- 감정축탁기관에 감정축탁서를 발송하여 감정의뢰(그 외 접수통지서, 지정통지서 등을 함께 생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 감정예규 제22조 제4항).
 - 전자적 송달도 가능하나, 감정축탁기관이나 감정의가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이용하여야 함. 의료감정에 첨부되는 진료기록부등 사본, 파일 형태의 각종 영상검사 자료 등이 양이 많고 전자화하기 어려워서 잘 활용되지 아니함.
 - 감정축탁기관에 감정축탁서를 보낼 때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를 함께 보내고 있으나, 감정축탁기관에서도 감정서를 제출할 때 어차피 진료기록부등 사본, 파일 등을 다시 보내야 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
- 감정축탁기관에서 감정축탁서를 반송하면 앞의 절차 반복
 - 감정축탁기관이나 감정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축탁에 응하지 아니한 때 이를 보고하면 해당 병원 또는 의사를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감정예규 제16조 제1항 제1호),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감정보호촉구서나 전화 등으로 감정서 제출 독촉
 - 감정축탁기관, 감정의의 감정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보호촉구



서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감정서 제출을 독촉함.

- 감정촉탁서를 접수한 감정촉탁기관의 ‘감정의(병원의 의사에 촉탁한 경우) 명의 또는 ‘감정촉탁기관(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촉탁한 경우) 명의’로 감정서 제출
 - 병원에 감정촉탁한 경우 실제 감정을 한 의사 명의로 감정서를 제출함. 반면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실제 감정을 한 의사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음.
 -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고, 감정료 증액 요청을 하기도 함(감정예규상으로는 감정하기 전에 증액 요청하게 되어있음. 제26조). 감정예규에는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제44조 제2항)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통상 법원은 감정서가 오기 전 먼저 감정료를 예납받았다가(감정예규 제43조) 감정서가 도착하면 감정료를 지급하고, 증액할 경우(감정예규 제44조 제4항, 제27조 단서)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여 지급함. 감정예규 제27조 본문에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료 감액 규정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또한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하게 되어있으나(제44조 제4항), 감정서 도착 후 바로 감정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음.
 -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촉탁서를 접수 후 또는 완료될 무렵에 감정료 산정서(자체 산정기준을 두어 통상 질의 문항 수에 따라 산정)를 제출하여 예납을 요청함. 감정료 예납을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음.
-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 : 감정보완신청, 사실조회신청, 또는 재감정신청 등



- 감정결과의 채택 및 해석

IV. 외국의 의료감정 관련 제도²⁾

1. 각 나라별 기본 특성

- 전통적으로 재판절차에 전문가 활용방식은 대륙법계에서는 감정인제도를, 영미법계에서는 전문가 증언제도를 활용해옴. 전문가 증언제도는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하므로 그 자격과 증언의 신뢰성이 중요함.
- 미국에서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 사이에서도 제도의 차이가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전문가 증언제도에 관해 연방법원의 운영 실무를 중심으로 검토함. 영국의 경우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전문가 증거에 관해 규정하고, 전문가 증인에 대한 지침이 있음.
- 독일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감정제도와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증인과 구분되는 독립된 증거방법으로 감정인제도를 두고 있음.

2. 미국

▣ 전문가 증언제도의 개관

- 법원이 미리 신청을 받아 전문가 그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정하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법원은 전문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의사 등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방식이고 당사자는 전문가 증인을 신문할 수 있음.
- Special Master(전문심리위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의 보고서 활용.

2) 이 부분 정리는 주로 법원행정처의 정책연구용역에 의한 ‘법원 신체감정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참조함.



- 전문가 증인의 보수는 진료과목별로 다르나, 시간당 평균 Review Fee는 356달러, Deposition Fee는 448달러, Court Fee는 478달러임.
- 각 주나 의료학회 등이 제시한 전문가 증인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함.
-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료감정전문위원회의가 설립되어 교육, 시험, 인증제도를 갖추고 전문 감정의를 배출하고 있음.

▣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

-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에 의한 전문가 증언(Party-Sponsored Expert)
 - 당사자 스스로 선정하여 신청한 전문가 증인의 증언
 - 일반적인 증인은 직접 경험한 바를 기억에 따라 법정에서 진술하는 반면, 전문가 증언은 증인의 과학적, 기술적, 전문 직업적 지식에 근거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구별됨. 전문가 증언은 신뢰할 만하고(reliable), 당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적합(relevant)하여야 하며, 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증거를 이해시키거나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
-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06조에 의한 전문가 증언(Court-Appointed Expert)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임명하는 전문가 증인으로, 실제 이 규정에 의해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는 적음.
 - 법원이 전문가를 선정할 때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리 신청을 받아 감정인 그룹을 관리하는 것은 아님.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는 연구 결과를 서면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교차신문이 가능.
-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 의한 Master
 - Special Master는 영국의 보통법 하에 본안심리에 앞서 증거조사나 계산 등을 수행함으로써 형평법원 판사를 돕기 위하여 임명하던 것에서 유래. 19세기까지 Master의 임무는 법원서기 정도의 역할에 그쳤으나, 점차 증거수집



또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짐.

- 2003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 전에는 비배심사건에서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Master가 제출한 보고서의 구속력을 인정하였고, 배심사건의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로 다루어짐. 2003년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Master의 보고서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하고 법원에서 재차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함.

■ 전문가 증언의 허용성 판단기준

- 과학적, 기술적인 증거 제출이 많이 늘어나고, 상대방도 이에 대응하여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과도한 비용지출 발생.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증인들이 상반되는 의견을 진술할 경우 배심원이나 법관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재판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전문가들 간의 토론 장소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이에 전문가 증언을 적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기 위한 이론이 발전됨.
- Frye 기준
 - 전문가 증언은 관련된 과학적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적 기술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이론.
 - 2급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심장수축혈압방식 거짓말 테스트에 관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건에서, 위 거짓말 테스트는 생리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장점: 간결하고 명백하여 법원 체계에 적용하기에 단순하고 편리함.
 - 단점: 법관이 '보편적인 승인'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증명할지에 따라 사건 적용 시 모호함. 새로운 과학적 방법이 일반화, 수용, 승인의 과정을 거칠 때까지 재판에서 배제되는 문제.
- Daubert 기준



- 원고의 어머니가 임신 중 특정 약물을 복용하여 원고가 선천성 장애를 입었다면서 위 약물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증언을 제출한 사건에서, '사실심 판사는 채택되는 과학적 증언이나 증거가 관련성(relevancy)과 신뢰성(reliability)을 가지고 있을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시.
- Daubert 기준은 신뢰성 없는 전문가 증언을 차단하는 기능, 반대 당사자가 신뢰성 없는 전문가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수고 방지, 사법 제도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 방지, 사법 제도가 좋지 않은 과학에 의존하는 것으로 일반에게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

■ 전문가 증언의 허용성

- 전문가 증인의 증언은 증거가 없을 때보다 사실을 개연성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나 사실이 조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면 그 증거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연방 증거 규칙, 제401조 관련 증거에 대한 시험).
- 전문가 증인의 의견을 도출할 때는 활용한 자료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여야 함(연방 증거 규칙, 제703조. 전문가 의견 증언의 근거).
- 예견되는 부작용과 증거가치를 비교하여 부작용이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증거가 쟁점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증거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문가 증언의 활용 실무

- 서면보고서 제출
 - 전문가 증언의 공개에는 서면보고서가 수반되어야 하고, 표명될 모든 의견의 완전한 진술, 그 의견의 기초나 근거, 의견 형성에 고려한 자료나 다른 정보, 의견의 요약 또는 의견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증거물, 지난 10년간 저술한 모든 출판물 목록을 포함한 증인의 자격, 증인이 지난 4년간 재판 또



는 선서증언(deposition)에서 전문가로서 증언한 사건들의 목록, 연구와 증언을 위해 지급받는 보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공개절차의 경우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90일 전까지 서면보고를 포함한 감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일쟁점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반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의 증거공개 후 30일 이내 감정서를 제출해야 함.

● 전문가의 선정

- 전문가 증인 선정은 대부분 소송당사자가 직접 선정
-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측이 부담하므로 대체로 선정 초기 협의과정에서 당사자와 비용을 논의함.
- 미국의사협회가 채택한 전문가 증인 요건: 전문의 자격증, 상당한 교육과 훈련, 해당 분야에서 5년 이내의 기간에 실무경험 존재

● 전문가에 대한 보수

- 법원이 정하는 시기에 법원이 정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보수 지급.
- 전문가 증인의 보수: 진료과목별로 다르나, Review Fee는 시간당 평균 356달러, Deposition Fee는 시간당 평균 448달러, Court Fee는 시간당 평균 478달러임.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순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음.

■ 전문가 증인의 자격요건

- 의료과실소송에서 특정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문제된 사건에 적용될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의 의학적 주의의무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의료전문가 증인은 피고인 의사와 같은 학과의 지식과 훈련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나, 서로 학과가 달라도 양 학과의 시술 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증인이 허용됨.



- 대부분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문가 증인으로 허용되나, 법원은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학력이나 학위, 학회 활동, 저서, 수상 경력, 증언하고자 하는 분야에서의 임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증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전문가 증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법원은 전문가 증언을 실시하기 전 전문가 증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함.

● 구체적인 자격요건 사례

- 펜실베이니아 주: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활발한 임상활동 내지 교육에 종사하거나 은퇴한 지 5년 이내인 자
- 델라웨어 주: 의료 면허 소지자로 해당 사건 발생 직전 3년 동안 유사 의료 분야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적·학술적 측면이나 환자들의 치료에 관여하였을 것
- 미국 마취 학회 기준: 현재 유효하고 제한 없는 의료면허를 소지하고, 마취과에서 보드 인증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보유하며, 사건 발생 당시 마취과 임상 실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송 사안이 되는 임상 실무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미국의료감정전문위원회(ABIME) 기준: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된 ABIME는 전문감정의를 배출하고, 교육과 시험, 평생 인증 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ABIME 인증을 위해서는, 독립된 의료검진과 장애와 손상 평가에 대한 지속적 의학교육을 받고, 교육, 경험, 윤리적 행동 기준에 맞는 선택적 지원 프로세스, 전문적인 행동지침 준수를 위한 서명계약을 해야 하고, 임상역량, 행동과학, 장애 시스템, 영구 장애 평가에 대한 미국의사협회(AMA) 가이드와 같은 역량시험을 통과해야 함.
-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기준: 사건과 관련된 질병과정 또는 절차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질 것, 그 분야에서 의료행위 또는 교육경험을 가질 것, 의료행위 또는 교육 경험이 최근 5년 이내에 있을 것, 미국의



학전문위원회(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또는 미국정형외과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가 인정한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갖춘 위원회에서 인증할 것

3. 영국

■ 전문가 증언제도 개관

-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 대하여 General Medical Council(GMC) 지침이 있고,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전문가 증거(expert evidenc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위한 전문가 증인은 보통 변호사가 지정하여 신청하고, 전문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Expert Witness Institute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어야 함.
- 전문가의 주소에 따라 감정료의 산정이 달라짐. 전문가의 주소가 런던인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고, 어떤 요율이 적용될지는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에 따라 달라져 이와 관련된 차별화가 논란이 됨.
- 전문가 증인은 법원 또는 위원회에 공정한 의학적 의견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 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음. 증인으로서 행동할 때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의사의 의무를 명시한 GMC 지침을 따라야 함.
-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고 변호사가 전문의를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도록 함.

■ 전문가 증인의 자격 등

- 전문가 증인의 자격: 특정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 교육, 훈련 또는 경험이 있을 것,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경험이 있을 것. 전문가는 전문가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기 전에 보고서 작성과 구두 증언에 관해 전문가 증인 교육을 받아야 함.
- 전문가 증인은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발행한 지침을 따라야 하



고, GMC 징계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체감정의 회신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회신 기간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전문가 증인이 전문의들이 진행하며 그들 사이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꺼리는 경우, 환자 개인의 사유로 신체감정을 못 받는 경우 등이 있음.

■ 전문가 증인의 의무

-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은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원을 돕는 것을 의무로 하며, 이 의무는 전문가가 지시를 받았거나 지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 전문가 증인은 상대방의 진술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수 있고, 어떤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지시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함.
- 특정 질문이나 문제가 전문가 증인의 전문 영역을 벗어난 경우 답변을 거부하거나 최선을 다해 답변해야 하지만 해당 문제가 전문가 증인의 권한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의 범위를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에 도달한 경위를 설명해야 함.

■ 전문가 증인의 보수

- 전문가 증인은 자체 평가 비용을 책정할 책임이 있음. 영국에서도 신체감정 감정료의 보수가 많지 않아 인력 부족 문제가 있고, 회신 기간 지연의 문제도 있다고 함.
- 전문가 증인은 증거를 공식화, 제시 및 논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음. 표준 이용 약관 또는 고정 수수료율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음.

- 수수료를 협상할 때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요소



- 논문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 청구인 심사
- 서면 및 전화 문의 처리
- 지식과 경험
- 모든 운영 비용, 여행 경비 및 전문 경비
- 법원에 출석하는 무급 시간 (취소 수수료 포함)

- 전문가 증인의 비용은 시간당 평균 120파운드이고, 진료과별로 전문가 증인의 보수가 다름. 특히 신경과, 정형외과 순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음.

4. 독일

■ 감정인 선정

- 법원이 공적 감정인 명부에서 찾거나, 동료 법관 문의 또는 인터넷 활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함.
- 감정인은 의뢰받은 감정이 자기의 전문분야에 속하는지, 다른 감정인의 협력 없이 감정이 가능한지 지체없이 검토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함.
- ‘공적으로 선임되고 선서한 감정인(공적 감정인)’은 전문성이나 자격을 검증하지 않고도 이를 신뢰할 수 있음. ‘공적인 선임’은 영업법 또는 수공업법이 정하는 권한 위임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수공업자협회, 농업인협회, 각 주법에 의한 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 등에 의하여 시행됨.
- 공적 감정인은 분야별로 선임을 관장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임되고, 위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독일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감정 의무가 있고, 법원의 감정인 선임 시 우선적으로 선임됨.

■ 감정인의 보수

- 위탁자가 법원이나 검찰인 경우 「전문가, 통역사 및 번역가의 보수 및 명예 판사, 증인 및 제3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위촉받은 감정 업무가 근무 내용에 포함되는 감정인은 감정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감정인의 보수의 범위에는 감정에 대한 보수, 감정 준비 작업과 감정에 필요한 여행 경비, 대기 시간, 감정에 든 비용이 포함됨. 신체감정에 대한 보수는 위 법률에서 시간당 105유로로 규정하고 있음. 시간당 보수는 감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 감정의 난이도, 기자재 사용 비용 및 기타 감정 당시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에 근거하여 책정됨.

■ 감정인의 의무와 책임

- 감정인의 의무: 절차의 지연과 예기치 못한 감정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사소송법에 규정. 감정인은 감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법원이 서면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 감정을 할 의무가 있는 감정인이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때에는 3,000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독일 의사법은 “의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의사의 진료 방법을 감정하는 경우 양심에 따라 의사로서의 신념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인의 의무는 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감정할 의무를 명시함.
- 민사책임: 민법 제839a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여 감정인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 보수청구권: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사법보수법 제1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라 국고에 대하여 보수 청구권을 가짐.

■ 감정인에 대한 기피절차

- 독일에서는 감정인에 대한 기피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그 기피 사유에 관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음.

■ 법원의 감정인 권한 지정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감정인이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어떤 서류들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감정인은 특정한 질문을 당사자나 증인에게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감정인의 조사에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나, 조사의 종류나 당사자의 권리(특히, 인격권) 보장의 필요에서 제한될 수 있음.
- 감정인에 대한 지시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시를 위한 기일에 당사자가 참여함.

■ 감정서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통제

- 독일에서는 자유심증주의의 대원칙을 따르면서도 법관이 비전문가로서 감정 내용을 검토할 때 최소한 점검해야 할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음. 더 나아가 법관에게 판결문에 감정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자신의 심증 형성과정을 상세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감정서 내용에 대한 실체적 통제를 시도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의료중재원과 의료감정위원회

- 독일에서는 의료과오 분쟁이 증가하면서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각 연방주를 관할하는 '의료중재원'과 의사협회가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의료감정위원회'가 개설되어 있음.
- 의료중재원
 - 보험회사와 각 주의 의사회가 함께 만든 조직.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되고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함.
 - 의료중재원은 감정의견을 제시하거나 예외적으로 손해를 인정하거나 또는 조정을 하는데, 환자와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가 가입한 책임보험회사가 당사자로서 조정절차의 초기부터 참가하는 것이 특징임.
- 감정위원회
 - 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의료과실의 유무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의사회가 절차 비용을 부담함. 보험회사는 관여하지 않음.
 - 감정위원회는 각 주의 의사회 규약에 기초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인 노



드라인 감정위원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법률가 1인, 외과의사 1인, 내과의사 1인, 병리학자 1인, 일반개업의사 1인, 마취과의사 1인, 안과의사 2인, 부인과의사 3인 등으로 구성.

- 당사자가 신청서를 감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감정 절차가 개시되고, 대부분의 신청은 환자가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사를 비방하려는 경우에 의사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 감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1인에게 의학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할 목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고, 사실관계의 해명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의사와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음. 감정인은 사실관계의 확인, 의료과실의 유무, 감정결과의 요약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률가가 주의의무 등 법률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하면, 그 감정을 토대로 의사 1인과 법률가 1인이 제1회 결정을 함. 제1회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위원장을 비롯한 외과의사 1인, 내과의사 1인, 병리학자 1인, 일반개업의사 1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림.

5. 일본

■ 감정제도 특성 등

- 2001년경 의사관계소송위원회가 설치되어 감정인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음.
-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의료사건집중부가 발족하여 심리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감정 실시율이 낮아지고 있고, 실시하는 경우에도 간략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함(공동세미나 때의 발제 자료에 의하면 특히 신체감정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함).
- 현재도 서면에 의한 단독감정이 일반적이지만, ① 구두에 의한 감정, ② 복수감정, 공동감정, ③ 새로운 감정방법(양케이트 또는 콘퍼런스 감정)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음.



- 감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고재판소 산하에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음.
- 감정인의 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감정비용이 20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결정되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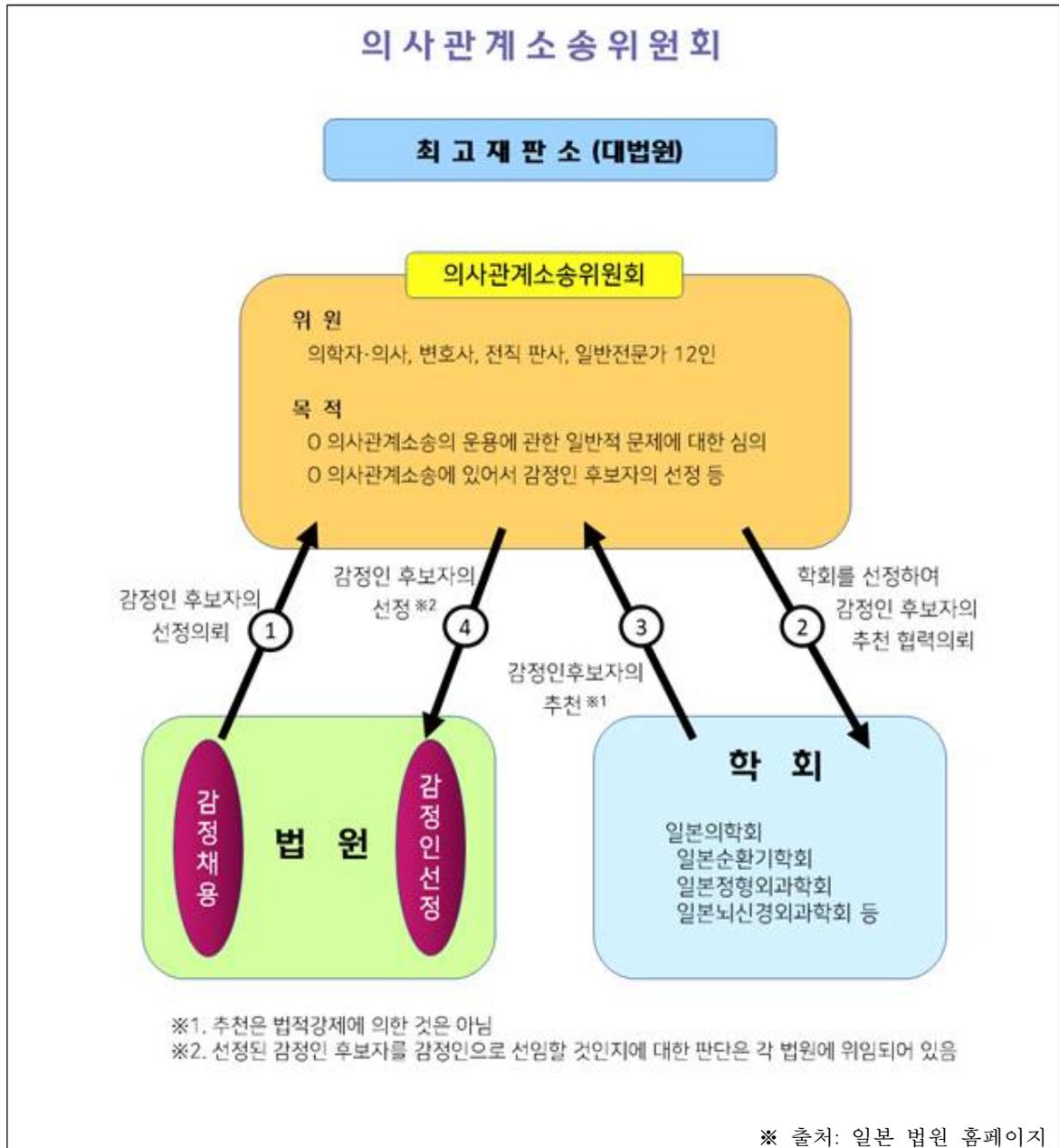
■ 감정 진행 절차 개관

- 당사자의 감정신청 → 법원의 필요성 판단 → 감정사항의 결정 → 감정인 선정 → 감정인의 선서 → 감정자료에 근거한 감정 → 감정서 제출 → 보충감정, 감정인에 대한 질문 등 → 감정료 지불

■ 의사관계소송위원회(医事關係訴訟委員會)에서의 감정인 선정

- 설치 배경
 - 민사소송 중 의료사고 분쟁사건과 같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관련 전문가를 찾기 힘들어 민사소송 평균 심리 기간이 장기화함. 이에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정인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인 선정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하는 개선방안이 제안되었음.
 - 당초 감정인 후보자 추천은 모두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류되었고, 각 재판부는 독자적으로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 또는 위원회에 감정인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절차

- 감정인을 필요로 하는 재판부로부터 감정인 후보자 선정의뢰요강에 근거하여 작성된 감정인 후보자 추천 의뢰서 제출. 감정인 후보자 선정의뢰요강은 원활한 추천절차 진행을 위해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정보를 알기 쉽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출하도록 규정.



- 감정인 후보자 추천이 의뢰되면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토론에 근거하여 당해 사안에 가장 적합한 감정인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판단되는 학회를 선정하고, 당해 재판부로부터 제출된 의뢰서를 첨부하여 추천의뢰를 함.
- 학회로부터 감정인 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위원회 사무국은 당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서 감정인 후보자에게 연락하여 이후 감정절차를 진행.
- 감정인 후보자 추천의뢰를 한 재판부는 위원회 사무국에 감정인 지정결정일, 감정서 제출일, 사건 종료일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함. 장래에 더 원활한 감정절차를 위한 환경 정비,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건 종료 시 재판부에서 감정인에게 재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위원회는 감정인 추천 방식에 관하여 평가하고 감정절차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인 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시행한 사건 모두에 대해 법원, 감정인 및 소송대리인 각각에 대하여 사건 종료 후 당해 사건의 감정절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 구성원

- 위원은 판사, 변호사, 의사 등 의료사고 분쟁 사건의 해결에 유용한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 및 사회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최고재판소장이 임명하는데, 위원장 및 위원장 대리를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되고, 대학교수 포함 의료관계자 10명,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는 의학계와 법조계 사이에 감정절차를 비롯한 의료소송의 심리방식에 관한 솔직한 의견 교환, 의학계에 감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호소하는 활동을 해 왔음. 의사와 의료단체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각 지역에서 의학계와 법조계 사이에 연락 협의회 등을 통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복수감정 제도



● 개요

- 동일한 감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 영역을 같이하는 복수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각 감정인이 독립하여 감정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 지바(千葉) 지방재판소가 지바현 대학병원, 지바현 변호사회, 지바지방재판소 삼자로 구성된 '지바현 의료관계재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감정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중임.

● 복수감정의 운영 방식

- 복수감정 개별방식: 3명의 감정인이 감정자료를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
- 복수감정 토의방식: 3명의 감정인이 감정자료를 검토하고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여 그 결과를 한 통의 감정서로 작성하여 3명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는 방식
- 복수감정 토의방식은 감정인 각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가 납득하는 측면에서 복수감정으로서의 장점이 희석되는 문제점이 있어 복수감정인 개별방식이 원칙으로 되었음.
- 다만 최첨단의료, 특이한 질환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높으며 감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토의방식을 채용.

● 복수감정제도의 장점

- 감정에 승복하지 않는 당사자가 별도의 감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의사가 작성한 사감정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하는 문제 방지.
- 복수감정 개별방식에서 의견의 내용이 일치하면 당사자의 승복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그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면 의견 사이의 비교 검토를 통해 당사자의 납득을 얻기 쉬움. 지바지방재판소에서 복수감정 개별방식으로 감정이 실시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보다 화해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바현 의료관계재판 운영위원회' 도입 이후 법원에서 운영위원회 협력병원의 각 병원장에게 감정인 추천의뢰를 하면 신속하게 감정인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의사에게 직접감정을 의뢰하는 방식보다 감정인이 승낙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의료소송에서의 콘퍼런스 감정

● 개요

- 3명의 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인이 각자 감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간단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서 구두로 감정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에 의한 감정.

● 도입 배경

- 불리한 감정 결과를 받은 당사자 측으로부터 감정인을 공격하는 준비서면이 제출되거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정인에게 정신적인 부담이 되었고, 방대한 자료 등으로 인한 시간상 부담과 인적 관계로 인한 심적 부담 등으로 감정인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음.
- 도쿄지방법재판소는 2001. 12.부터 의료기관과 도쿄3변호사회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측으로부터 콘퍼런스 방식에 의한 감정을 제안받아, 도쿄지방법재판소 의료집중부에서 2003. 1.경부터 콘퍼런스 감정을 실시.

● 감정절차

- 감정이 채택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감정 사항을 확정하고,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감정자료를 선별한 후 진료과목 등을 정하여 3개 의료기관에 감정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함.
- 2주에서 1개월 후에 3개 대학병원으로부터 감정인 후보자를 추천받으면 법원은 추천된 감정인 후보자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고, 담당 판사와 서기관이 감정인의 근무처를 직접 방문하여 감정자료를 교부하고 의견서의 작성 방법 등 감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함.



- 선정된 감정인은 감정자료를 근거로 감정 사항에 대한 견해를 기재한 의견서를 콘퍼런스 감정기일의 약 3주 전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법원은 그 사본을 양 당사자에게 송부함.
- 콘퍼런스 감정기일에 각 감정인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법원의 쟁점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법원의 보충적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며 이후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함.
- 콘퍼런스 감정의 내용은 감정조서를 작성하여 기록하고, 콘퍼런스 감정 종료 후 감정인에게 감정료(2007년 기준 1인당 20만 엔)가 지급됨.

● 콘퍼런스 감정의 장점

- 복수의 전문가가 동석하여 서로 논의를 함으로써 각 감정인 의견의 변화, 그 이유가 선명하게 되어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고,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감정 결과의 형성과정이 명백하게 드러나 공정성이나 전문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음. 감정인의 정신적 부담이 경감되고, 구두로 감정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상세한 감정서를 작성하는 데 따르는 시간적 부담이 경감됨.

■ 전문위원 제도

● 개요

- 감정인은 이념적으로는 법원의 보조자이지만 실제로는 증거방법으로서 기능하는 면에서, 쟁점 및 증거정리, 소송 진행 협의 단계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제도를 두게 되었음.
- 일본에서 전문위원 제도가 도입될 때, 의료사건에 관하여는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의사가 직업이 같은 피고 측에 유리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것이 법원의 심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우려가 영향을 주었음.
- 입법 과정에서는 전문위원이 관여하는 범위로 쟁점정리만 인정할 것인지, 증거조사, 화해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었고, 절차적으로도 당사자의 의



견 청취, 동의의 필요성과 범위가 문제되었음. 최종적으로는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에는 당사자의 의견 청취, 화해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적 요건으로 하였으며, 전문위원은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아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여 법원의 심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형태로 정리되었음.

● 절차

- 전문위원은 비상근직 법원직원으로 최고재판소가 필요한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법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전문위원은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법원 외의 법원의 전문위원의 직무도 수행할 수 있음.
- 법원은 ① 쟁점, 증거정리 또는 소송 진행 협의를 할 때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②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신문 또는 감정인신문을 할 때 소송관계 또는 증거조사 결과의 취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③ 화해를 시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을 관여하게 할 수 있음. 전문위원이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전문위원 설명의 한계

- 전문위원은 판사의 조언자일 뿐 감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 대한 결론 및 당사자 간에 진정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해 전문위원이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전문위원의 설명이 허용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적 식견에 대한 설명을 구하되, 당사자가 전문가의 협력을 받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우리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은 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음).

● 전문위원의 증거조사절차 참여

- 전문위원은 소송관계 또는 증거조사 결과의 취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및 감정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 전문위원은 ① 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②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음.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전문위원의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이 법원에 의한 신문에 유사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의향을 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전문위원의 설명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전문위원의 설명은 전문위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독립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부정설이 다수설(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발언한 정보로 볼 수 없고, 엄격한 절차에 의한 감정을 대체, 잠탈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
- 오사카지방법재판소의 의료사건 집중부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조서에 전문위원이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의 요령도 부가하여 전문위원 설명을 기록하고 있음. 전문위원의 설명을 심증 형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설명 전후에 전문위원의 설명 내용을 판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기록된 설명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판결에 이용하는 방식, 둘째,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에 대한 당사자 쌍방에 의한 고려의 기회와 보충 주장·입증을 거친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결에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감정인의 보수

- 감정인의 보수 등은 「민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음. 감정인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감정에 소요된 기간, 개개의 감정의 난이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정해짐.
- 의료감정비용은 1인당 20만 엔(3명에 60만 엔)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감정비용보다 훨씬 고액임. 오사카 지방법원 「의사부 심리운영방침」에 따르면 감정료는 50만 엔을 기본으로 하고, 보충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0만 엔을 가



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안의 난이도, 감정사항 내지 감정의 내용, 감정 방식 등에 의해 감정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V.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등

1. 감정절차의 지연(장기화) 문제

■ 개요

- 감정촉탁기관과 감정의 선정의 어려움, 감정촉탁서의 잦은 반송 및 반송 자체의 지연, 감정서 회신의 지연 등으로 인한 감정절차의 장기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감정촉탁서 관련 문제점 및 원인

- 감정사항의 정리 문제 : 신체감정의 경우 감정사항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감정사항을 정형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 피해자 측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파악하고 문제 부분을 찾아내기도 어려워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질의가 많음. 법관 또한 업무과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을 요청하기에 한계가 있음. 중복되는 과도한 질의사항, 부적절한 질의사항(담당 세부과목 이외의 질문, 진료기록부등의 단순한 번역 요청, 포괄적인 질의 내용, 법률적 평가에 관한 질의 등)은 감정촉탁기관, 감정의가 감정촉탁서를 반송하거나 감정서의 제출을 지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됨.
- 첨부자료의 문제 : 감정촉탁서에 첨부해야 하는 진료기록부(각종 촬영 영상 등 포함)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이 소요됨. 첨부자료가 방대하고 파일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등 전자화하기 어려워서 전자적 송달이 어려움. 영상자료 등을 부실 제공한 경우 감정촉탁서 반송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감정예규에 감정서 회신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감정촉탁서 양식에도 회신



기한을 입력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회신기한을 정하지 않고 감정촉탁서를 보내는 경우가 보통임. 한편 회신기한을 정해도 별달리 실효성이 없기도 함.

▣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의 선정 관련 문제점 및 원인

- 세부과목 지정 관련 : 감정기관등 명단에서 감정촉탁기관, 감정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부과목을 입력해야 함. 세부과목이 매우 다양하고 현대의학의 발달, 분업화로 임상현장의 임상과목이 계속 세분화되기도 하여서 전문가가 아닌 환자, 피해자 측 및 법원³⁾의 적절한 세부과목 선택의 어려움, 선택한 세부과목에 등재된 감정의가 없는 문제, 감정촉탁을 받은 병원에서 감정사항과 감정의의 세부과목 불일치로 반송하는 문제 등이 발생함.
- 감정기관등 명단의 관리 관련 : 1년에 1회 작성되고, 조정 등 절차(감정예규 제7조)가 있으나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감정의의 소속 변동, 세부과목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임상현장의 실제 세부과목 구분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지역별 차이 : 지역별로 감정기관등 명단이 관리되어 지역별로 등재된 병원, 감정의가 부족한 문제, 다른 지역 병원에 감정촉탁을 하여도 관할이 아니라고 반송하는 문제가 있음.

▣ 감정촉탁서 반송 등 관련 문제점 및 원인

- 예상견적을 받거나 감정에 응할 의사를 확인 후 감정촉탁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서 감정촉탁서를 받은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단순한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반송하는 경우가 빈번함. 감정과목별로 등재된 병원과 의사가 한정되어 있어서 더는 감정촉탁을 할 병원과 의사가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해당 과목에 더는 등재된 병원과 의사가 없는 경우, 진료기록감정은 대한의사협회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감정촉탁기관으로 신청하도록 권유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위 기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하지는 않음), 신체감정의 경우 위 두 기관 모두 감정을 하지 않아서 통상 신청인 측에 감정촉탁

3) 감정예규 제22조 제2항 단서에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을 할 병원과 의사를 밝히도록 보정명령을 보내어 해결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 어려움과 불만을 호소하기도 함.

- 최대 17번까지 반송된 경우가 있었고, 더는 감정촉탁을 보낼 병원이 없는 경우 이미 반송한 병원들에 다시 한 바퀴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서울고등법원 관내 메이저 병원 포함 일부 병원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반송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감정을 하는 병원이 일부 특정병원에 집중되기도 함.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특수한 진료 관련 과실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그러한 진료를 하지 않는 일반종합병원의 의사가 감정을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
- 또한 별도로 수락통지를 하는 절차도 없어서 감정촉탁서 반송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감정촉탁서를 받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여러 차례 촉구서를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2년이 지나서 반송한 경우도 있었음.
- 전자적 송달, 반송이 어려움. 우편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간혹 분실 등의 문제도 발생함.
- 병원에 감정전담직원이 없어서 감정촉탁서와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 등에 법원과 소통이 어려움.

▣ 감정서 회신 지연 관련 문제점 및 원인

- 감정예규상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에 비추어 감정서의 회신기한을 최대 6개월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6개월 내에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특히 진료기록감정),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음.
- 감정서 회신이 장기화할 경우 법원에서 촉구서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하여 촉구하는 등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업무 과다, 병원 측 소통할 담당자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가 어려움. 한편 문서로 촉구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기도 함.



- 감정의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소속 의료기관의 방침, 상급자로부터 추천이나 권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진료나 개인 연구보다 후순위로 밀림.
 - 경제적·비경제적으로 감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부족함.
 - 감정 방법, 담겨야 할 내용, 판단기준 등에 관한 교육 기회가 없어서 감정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적절한 질의사항, 판단에 필요한 자료 누락 등도 회신 지연의 원인이 됨.
 - 개인 명의로 판단,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함(환자 측과의 시비 발생, 같은 의사로서의 이해관계나 친분, 학계의 견해 차이 등).

2. 감정결과의 충실성, 공정성 등의 문제

■ 문제점

- 질의 내용에 대해 '예, 아니요' 등으로 정의 없는 단답만 하는 사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도록 회신하는 사례, 일부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거나 임의로 다른 문항과 묶어 회신하는 사례, 감정자료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회신하는 사례, 회신 이후 추가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종전의 답변을 반복하는 사례, 계산이나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례, 평균적인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 진료기록부와 상이한 전제 사실하에 감정한 사례 등 감정결과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법원이나 당사자가 감정결과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여도 감정절차의 장기화 문제와 맞물려서 이를 해결하기까지 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함.
-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는 것이기는 하나,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감정결과가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결과의 부실은 재판의 신뢰저하로 이어짐.



■ 원인

●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질의사항) 관련

-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사실로 담은 감정사항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 감정사항이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음(특히 진료기록감정). 감정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이 누락된 경우가 있음(통상 병원에서는 법원에 다시 필요한 자료 보완의 요청 없이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영상이 없음' 등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음).

● 감정의의 경험, 노력, 지식 등 관련

- 감정의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일방 당사자가 병원, 의사인 경우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동료보호경향).
- 감정의가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 없이 기록만 보고 감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음.
- 감정의가 감정결과를 사용할 사람들(병원, 당사자)의 의학적 지식의 정도와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음.
- 감정의가 계산이나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는 수고를 하려 하지 않음.
- 감정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율학습에 의존함.

● 감정병원, 감정의의 수준 관련

- 감정병원, 감정의마다 의학지식, 임상경험, 전문성의 정도 등에 수준 편차가 있음.
- 이를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선정할 만한 감정병원,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선정하면 공정성에 시비가 생길 수 있음.

3. 의료감정의 특수성으로 인한 개선의 어려움



■ 감정 주체의 성격

- 의료감정을 하는 병원, 의사의 주된 업무는 환자의 치료이고 또한 그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임. 그런데 의료감정은 사후적으로 문제의 원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의료행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반면 다른 감정에서는 감정을 주된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나 감정인이 존재함. 이들은 지속적으로 감정인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감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감정인으로서의 경력을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감정에 임할 경제적·비경제적 유인이 있음.
- 의료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고, 그런 기관(현재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원)이 있더라도 실제 감정행위는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의료감정제도는 의료제도와 맞물려 있음. 이로 인해 제도개선이 어려움.
-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병원, 의사인 의료과실사건의 경우, 병원, 의사들은 서로 경쟁보다는 환자의 건강보호, 증진이라는 같은 목적 아래 이해를 같이하며 협력·보완하고, 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감정주체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그럼에도 다른 감정주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음.

■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의의 통제, 관리 등의 어려움

- 위와 같은 감정주체의 성격상 법원에서 감정촉탁기관이나 감정의를 통제·관리하기 어려움.
 - 감정결과 제출 지연 시 감정료 감액, 감정인 명단 등에서 삭제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감정인 평정 등을 활성화해도 다른 감정과 달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음.
 - 의료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경제적·비경제적 유인책을 법원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움. 의료기관과 법원과의 소통이 없음.

VI. 의료감정제도 개선 및 추진 경과



1. 2017년

- 감정촉탁병원 확대 : 국·공립병원과 대학부속병원에서 일반 종합병원까지 확대(감정예규 제6조 제3항 개정)
- 감정료 인상 등 : 감정료를 과목당 배액으로 인상(신체감정 20만 원→40만 원, 진료기록감정 30만 원→60만 원)하고, 재판장 재량으로 증액할 수 있는 규정 마련(감정예규 제39조 제3항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의료, 건설) 도입

2. 2018년

- 감정센터 도입을 검토(① 건설, 의료분야 상임 감정인 배치 또는 ② 감정담당 판사 배치)하여 2018년 3월 법원장 간담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정되지 않음.

3. 2020년

- 통합감정지원시스템 오픈(2020. 1. 31. 오픈) : 감정이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관리를 효율화하며(감정진행 사건 탭), 감정인 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평정 결과 확인을 통한 적절한 감정인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감정인평정대상사건 탭) 통합감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4. 2022년

- 통합감정 메뉴 개선 :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합감정 메뉴를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의 기본 화면에 편입시키고, 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색상별 사건 구분과 변환, 감정서 등재 시 전자소송기록뷰어에 감정인평정대상사건 안내 공용부전지 부착 등의 시스템 개선
- 법원행정처에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신체감정등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발주하여 2023년 1월 말 최종보고서(이하 ‘정책연구용역보고



서'라 함)가 제출됨.

- 각국의 신체감정등 제도 조사 내용, 심층면담 분석을 통한 신체감정등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제언, 신체감정등 개선방안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 등이 담김.

- 2022. 7.경부터 사법행정자문회의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이하 '3기'라고만 함)에서 '감정·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그중 하나로 '의료감정 개선방안'을 논의함.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2022. 10. 12. 제2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결과를 보고만 한 후 4기에서 계속 연구·검토하게 결정함.

5. 기타(의료감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 201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감정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사건 및 손해배상사건 전담법관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 2019. 12. 1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하 '사법지원실' 이라고만 함)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법지원실에서 검토한 '감정절차의 스캐줄러로서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역할 확대방안' 및 '각급 법원과 감정병원의 업무협약' 관련 의견 청취
- 2020. 1. 20. 사법지원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손배·의료전담부와 상임전문심리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2020. 6.경 사법지원실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고등법원 권역별 간담회 개최 및 각급 법원과 관내 병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검토했으나 시행되지 않음
- 2021. 10.경 민사지원제1심의관실에서 2021. 9.경 간담회 시 김동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개선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추천기관 확대에 대해 검토함. 2021. 10. 15.과 16. 김동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법원행정처의 출장명령하에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 각 참석하여 학회 집행부와 의료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



회를 함

- 2022년 1월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원장, 감정의 및 법무담당자들과 '신속한 의료감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산됨

Ⅶ. 기존에 논의되거나 언급된 개선방안들

1.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사항⁴⁾

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관여 확대(감정절차의 스케줄러로서 관여)⁵⁾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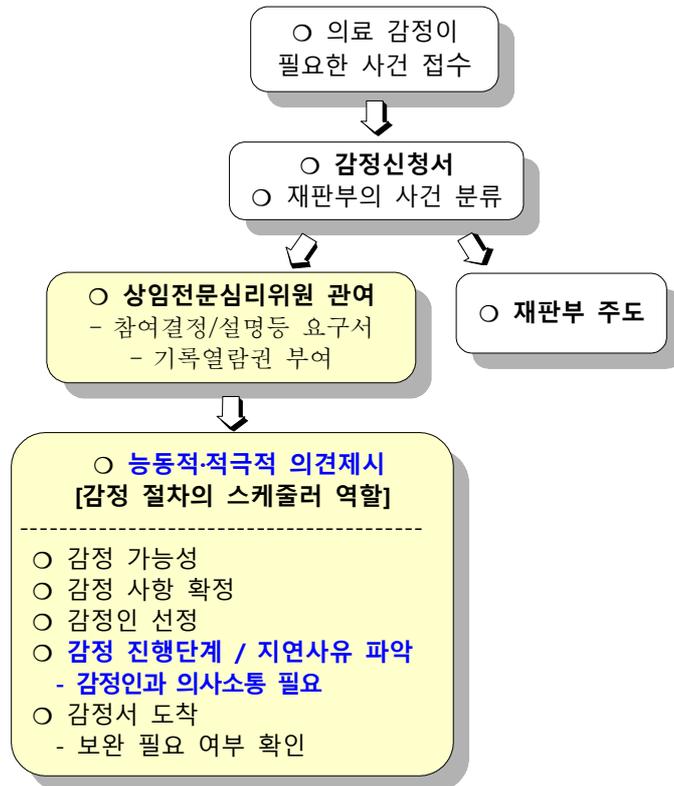
- 의료감정 절차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조력 필요성
- 감정절차 지연, 반송 등의 원인으로 법원의 감정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 적절하지 못한 감정 사항, 해당 전공 분야 파악의 오류 등을 지적하기도 함
- 의료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나 담당 법관,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대두

■ 개선안의 개요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4) 이하는 3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것임

5) 2019. 12. 12.경 사법지원실에서 구상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안임.



■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현재 의료 상임전문심리위원 현황

- 서울고등법원에 2명,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등법원에 각 1명씩 총 7명
- 그중 산부인과 전문의 1명, 내과 전문의 1명, 신경외과 전문의 3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흉부외과 전문의 1명 ⇨ 2023. 2. 13. 기준 동일함

■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의 차이



	기존 사건 관여	스케줄러로서의 관여
재판부의 설명 등 요구	□ 개별 사항에 대한 설명요구 - 감정인 선정 / 감정 사항 확정 / 감정서의 적정성 등 <u>개별 사항에 대하여 설명</u> 을 요구함 - 해당 재판부가 재판 진행 중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u>개별 설명요구서</u> 를 제시함	□ 포괄적 전체적 설명요구 - 사건 배정 초기에 ‘감정인 선정, 감정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파악, 감정서의 적정성, 감정서 보완의 필요성 파악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는 부등문자가 기재된 <u>포괄적인 설명요구서</u> 를 제시함 - 즉 감정 절차와 관련된 <u>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u> 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요구함
역할	□ 수동적 - 재판부의 구체적 설명, 지시에 따른 의견제시	□ 능동적·적극적 -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 진행단계에 따라 스스로 의견제시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의견제시 - 예컨대 감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감정인과 연락하여, 감정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방안에 관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함

▣ 도입가능성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설명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함. 감정사건 처리지연, 감정진행 단계도 의료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임전문심리위원에도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과 관련이 있다면 사전에 배제 가능
-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의료전담 재판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법원 및 시범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실시를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문제점

-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감정 사항을 검토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증명 책임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관하여 재판부에 설명·의견을 제시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감정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 변론주의 위배 여지가 있음.

-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보완사항 등을 발견하거나 변론주의 위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조언이나 지시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전체 위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나. 콘퍼런스 감정 도입

■ 필요성

- 의료감정의 경우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감정결과가 승패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감정도 중요함
- 감정의사별로 감정서 기재 내용의 충실도에 편차가 존재하고, 감정결과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답변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음

■ 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의 콘퍼런스 감정

- 의의
 - 3인의 감정인에 의하여 실시되는 콘퍼런스 방식에 의한 감정. 2003년 1월에 처음 도입
 - 각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기일에 구두로 감정의견을 진술,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현재까지는 도쿄지방법재판소 이외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음
- 특징
 - 복수의 감정인이 동석하여 구두로 의견 진술, 필요에 따라 감정인간에 논의



를 하게 되면서 각 감정인 사이의 의견 차이 및 이유가 선명하게 되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됨

- 감정이 공개적인 법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의 투명성, 복수의 전문의에 의한 감정결과의 형성과정이 밝혀짐에 따라 감정결과의 공평성, 객관성이 확보됨

■ 도입가능성

- 감정절차에서 스캐줄러로서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역할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이거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 등 특정 사건에서 관련 감정인을 2명 이상 선임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중심이 된 콘퍼런스 감정 도입 가능

■ 문제점

- 감정료가 저렴하고 감정을 부수적인 업무로 여기는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 복수의 감정인의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감정 대상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여건 부족
- 감정인이 복수로 선정됨에 따른 감정료 상승과 이로 인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증가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전체 위원 11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타 3명.
- 기타의견: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취지는 좋으나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시범실시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수요가 실제로 존재할지 의문임. 수요가 존재한다면 도입 가능하나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 감정촉탁기관 확대



■ 감정촉탁기관을 학회로 하는 방안

- 신체감정(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수요가 많음)을 위해서는 일정 의료시설의 이용이 필요한데, 각 학회로 촉탁 시 신체감정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감정의가 현업에 종사하는 병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대한의사협회는 신체감정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 밝힘
-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각 개별학회는 검증되지 않은 이익집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각 학회원들의 실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 퇴직 교수 등의 활용

- 의료감정 인력풀에 대학병원 등에서 퇴직한 교수들을 포함하는 방안
- 일정 의료시설 이용이 필요한 신체감정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법 제39조 제1항6)의 시설 등의 공동이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
- 퇴직 교수의 경우 경험은 풍부하나 최신의학 변화에 뒤떨어지는 문제점. 그러나 의료감정이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의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퇴직 교수가 감정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단, 70세까지 등으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의결하지 않음

라. 감정료 증액

■ 저렴한 감정료

6)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2008년 감정예규가 제정되어 과목당 신체감정료 2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 30만 원이다가, 2017. 4. 12. 감정예규를 개정하여 2017. 5. 1.부터 과목당 신체감정료 4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 60만 원으로 100% 인상함
- 여전히 다른 감정인의 감정료와 비교하여 감정료가 저렴하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감정촉탁기관 신청에 소극적임

■ 외국의 경우

- 미국: 전문가 증인으로서 보수는 사전검토 및 예비적 평가에 시간당 400~500달러,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500달러 추가
- 독일: 시간당 105유로⁷⁾, 시간당 보수는 감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 추후하게 될 감정의 난이도 등에 근거하여 책정됨
- 일본: 일반적으로 서면감정 60만 엔, 복수감정·콘퍼런스 감정은 1인당 20만 엔으로 3인 합계 60만 엔

■ 문제점

-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료 100% 증액한 지 5년 경과
-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이 지연되거나 반송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감정행위가 진료업무에 밀려나는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임에 비추어 보면, 감정료를 인상하는 방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증액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전체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 찬성의견 중에는, 현재보다 30% ~ 50%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0% 이상 증액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시간당 비용을 책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신체감정료는 과목당 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진료기록감정료

7) 종전에 시간당 25~52유로이었다가 최근에 개정되었다고 함



는 현재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전문의의 진료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음

- 반대의견 일부는 2017년 감정예규 개정으로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가 100% 인상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감정회신지연은 감정료의 문제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마. 기타

■ 감정촉탁 현황 등 집계 필요

- 각 법원에서는 특정 감정촉탁병원의 특정 감정인에게 몇 건이 촉탁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촉탁을 하게 됨
- 개별 감정촉탁병원의 진료과목별로 신체감정촉탁 건수, 진료기록 감정촉탁 건수, 반송 횟수, 회신기간 등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감정촉탁이 집중되는 병원이나 감정인이 있으면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정서 회신 지연이나 반송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정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각 법원에서 관내 병원들의 감정의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세미나 개최

- 주요 진료과목별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감정의를 상대로 업무 지원 동기, 감정료 적정 여부, 감정서 작성 업무부담 정도, 보완감정 실태, 기타 애로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들이 의료감정을 기피하고 감정촉탁을 반송하거나 지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 각 법원에서 관내 병원들의 감정의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내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감정반송을 최소화하고, 감정회신 기간을 적절한 범위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

■ 감정회신일 구체적 명시

- 감정촉탁 시 감정인과 사전에 상의하여 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안



- 회신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다른 일에 미루어지는 경향. 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 시 회신일이 촉박한 감정부터 순서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감정서 제출기한을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설정, 감정의가 최초 감정서 제출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 감정서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정료를 감액(감정예규 제27조)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전원 찬성

▣ 표준 감정신청서의 양식 마련

- 신체감정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양식의 정형화 필요(과목별로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준 감정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전담부 등에서는 신체감정의 경우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2.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방안들

가. 심층면담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내용

▣ 감정의사 및 감정촉탁기관 선정 등 절차상의 개선방안

- 관할구역별 구분이 없도록 감정인 지역 확대
- 출장감정 관련 제도 설립 운영
- 감정의 세부 진료과 반영 : 법원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서 구분한 세부 진료과목과 실제 임상의료현장에서 구분된 세부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할 필요성
- 로컬 병원(2차 의료기관)으로 감정인 인력풀 확대



- 다수 진료과의 경우 단일 감정의료기관 축적으로 효율성 제고
- 복수감정제도 도입 및 활성화
- 감정 난이도와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감정의뢰 절차 진행
- 직접 대면 감정 도입 고려

▣ 감정시스템 구축 등 법원의 감정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 법원-병원 간의 소통 플랫폼 구축
- 전자축타시스템(또는 감정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의료감정축타의 전체 시스템을 모두 전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여 종이축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 감정기관·감정의의 구체적인 정보(계좌정보, 개인정보, 출장감정 가능여부, 영상재판 가능여부 등)를 저장·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현재도 모두 전자시스템이나 구체적인 정보는 담겨있지 않음)
 - 감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함으로써 향후 감정, 교육 등에 활용
- 정신건강의학과외의 경우 감정인 목록 비교 추가사항 고려 : 입원 병동 구비 여부 확인 등
- 신변노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마련 : 소송 당사자의 항의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음. 익명 감정의 필요성 등
-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감정자료에서 진료했던 의료기관, 진료의사, 환자식별정보 등을 삭제하고 감정의에게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달라는 안
- 감정평가시스템 개발 및 행정담당자 관리 강화 : 감정 이후 감정인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달라는 안(⇒ 이미 있음),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행정직원에게 대한 최소한의 자격과 의무 및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 감정자료의 표준화 및 간소화 : 감정을 의뢰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를 표준화하고, 감정의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
- 법원-감정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감정인 자격제도·교육제도 구축 : 법원행정처 주관의 관련된 법조계(법원, 법원행정직, 변호사), 의료계(의사, 병원행정직) 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인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시스템 논의부터 불만 사항에 대한 건의를 소통할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안. 또한 감정의, 의료기관에서 감정 관련 행정직원 대상의 감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의료감정의 업무 매뉴얼 개발 : 의료기관에서 감정 관련 업무에 관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 법원 내 감정 담당자 선정 및 역할 강화 : 법원에서 주기적으로 감정회신에 대한 촉구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 법원 내부에 전국의 감정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가동되어 촉탁, 반송, 회신 전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감정에 대한 의료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의료계 쪽의 의견)

■ 회신의 신속성 및 재판 효율성 제고 방안

- 회신기한 및 마감시간 지정
- 영상재판 활용 : 사실조회를 영상재판으로 대체하자는 의견
-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활용을 활성화하자는 의견
- 반송사유 기재 : 반송하는 피감정인 성함과 진료과목 등을 명시할 필요. 이를 위해 입력할 수 있는 공문 양식을 마련하자는 안
- 기존 신체감정 데이터를 활용한 신체감정판단 체계 구축 고려
- 일괄처리제도 구축 : 회신 지연 시 자동으로 다른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고 해당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 감정의-감정의료기관에 대한 비금전적 보상체계 고려 : 감사패나 honour-ship 제공, 병원평가 시에 인센티브, 우수 병원 지정 등
- 감정료 관련 : 감정 내용(질적 판단)에 따른 감정료 지급, 감정 난이도와 소요시간, 초과 장수에 따른 감정료 산정, 감정료 기준을 변호사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규정으로 만들자는 의견, 감정료 증액신청에 관한 안내 필요성(⇒ 이미 감정촉탁서 보낼 때 안내문구 삽입됨), 공익적 활동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방안 마련 등
- 신체감정의 향후치료비 산정 시 의료기관의 의료비 단가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감정수가체계에 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 기타 제도 개선방안

- 감정서 및 관련 서류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준용하여 보관하도록 하자는 안
- 신체감정서 양식을 부담스럽지 않은 양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안

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들의 제도 개선방안 제언 내용

1) 법령 개정사항 제언

■ 민사소송법 개정사항, 전자문서 이용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사항 제언

- 감정인 복수 지정 가능 문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촉탁 가능 문구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제언이나, 개정 없이도 이미 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등 의미가 없어 보여서 생략함.

■ 감정예규 개정사항 제언

- 감정기관등 명단의 전문성 보완 : 전문의 추천기관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정부 산하의 위원회 등을 추가하자는 안(제6조 제3항 관련)
- 감정회신기간 및 복수감정인 지정 :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촉탁·송달하고, 복수의사에게 의뢰하며, 1개월의 회신기간을 지정하고, 기간 내 미회신 시 다



른 의사에게 촉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안(제10조 제2항 관련)

- 감정담당의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신상노출 금지조항 신설 : 법원 내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외부에는 가명처리하여 비공개하자는 안(제23조의2 신설)
- 감정비용 현실화 : 신체감정 감정료를 600,000원으로 증액하자는 안(제39조 제1항 관련).

2)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

■ 제도운영상 개선방안

- 워크숍 개최 : 소통 원활화
- 감정의에 대하여 비물질적 보상체계 신설 운영
- 감정결과 반영확인을 위한 감정의의 사건조회 서비스 이용 : 감정업무의 공익적 성격상 그 기여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감정결과가 반영된 판결서나 서류를 감정의 본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
- 감정업무 등에 관한 사항, 감정업무 관리인력 배치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반영 :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평가제도에 의료감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료기관은 병원인증평가제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회신 지연, 반송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감정인 육성 교육제도, 전문감정인 인증제도 도입

- 미국의 의료감정전문의위원회를 참조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 등의 전문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갖추어 장기적으로 전문감정인을 육성하고 관리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3. 그 밖에 언급되는 개선방안들⁸⁾

8) 공동세미나에서 논의된 개선방안, 발제 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위원들이 주변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 영상재판에 의한 감정인신문 활성화

-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에 의해 영상재판으로 감정인신문이 가능해짐. 영상재판을 이용하면 감정인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고, 종전에 선서를 위한 감정인신문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촉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의료감정도 감정인신문을 통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보충진술 의미의 감정인신문도 활성화된다면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공방과 쟁점정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의료감정 관련 감정서 정리, 현황 집계, 정보 공개 등

- 의료감정촉탁서 반송과 지연 통계, 의료소송의 지연현황 등을 정리하여 이를 사법연감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 제도개선의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
- 의료감정이 이루어진 감정서를 모아서 관리하여 추후 유사 사건 감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상임전문심리위원)

■ 감정촉탁서 반송을 막기 위해 감정보규에 선언적 규정 도입 등

■ 감정료, 감정비용 관련

-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료가 고액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견
- 신체감정을 위해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비급여로 관리되어 부담이 가중되므로, 요양급여기준 등을 개정하여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

■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감정의가 익명 처리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전문심리위원의 비공식적 재판 개입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 감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법률요건(과실 유무, 인과관계 등)을 질의하는 형

토대로 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함.



태의 감정사항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 감정인 교육, 양성과 자격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인원을 확대하여 설명서 제출, 직접 진술 등이 다수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 감정을 반드시 시행하는 실무를 개선하자는 의견
 - 일반적인 의학지식을 관련 서적, 논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법률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실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사실만으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미국의 *res ipsa loquitur* 원칙의 법리, 일본에서 진료기록 감정절차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등 참조
 - 신체감정절차를 진단서나 소견서 등 형태로 대체하자는 의견 : 현재 감정촉탁의 방식으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허위감정죄로 규율할 수 없고 선서를 하고 감정을 해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반면 진단서나 소견서의 경우 허위 작성 시 허위진단서등 작성죄와 같은 처벌규정(형법 제233조)이 있고 의료법 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적 제재도 가능하며, 또한 의료법상 작성의무가 부과되기도 하므로 오히려 증거가치가 높다는 의견

VIII. 중점적으로 논의할 개선방안 제안

1. 제안배경

- 기존에 논의되는 개선방안들을 ① 단기 개선방안 VS 중장기 개선방안, ② 현 제도의 큰 틀 변경 없이 가능한 개선방안 VS 제도의 큰 틀 변경이 필요한 개선방안, ③ 감정예규의 개정 없이 가능한 개선방안 VS 감정예규의 개정이 필요한 개선방안 VS 법 개정이 필요한 개선방안, ④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 VS 외부기관(병원, 의사,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 등이 필요한 개선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해볼 수 있음.



- 여러 개선방안들 중 3기에서 다수가 찬성한 개선방안, 자주 언급되는 개선방안,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등에 비추어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개선방안 등을 일부 추출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단기개선방안

가.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인력풀 확대

1) 제안배경

- 현행 감정예규는 의료감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정하고 있어서(제14조 제1항) 실무상 의료감정에서 감정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또한 감정예규에 감정촉탁병원이 3차 병원(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으로 되어 그러한 병원 소속 의사만 감정의가 되어서(제6조 제3항, 공정성이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한한 것으로 보임), 의료감정 수요보다 공급이 과소함.
- 서울, 수도권 소재 법원은 관할구역 내에 3차 병원이 많지만, 지방 소재 법원은 관할구역 내에 3차 병원이 적어 진료과목에 따라서 감정병원 및 감정의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감정인의 자격은 감정이 필요한 전문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면 되고, 감정인이 3차 병원에 근무한다는 점은 전문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근거는 되어도 그것만으로 감정서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굳이 3차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한정할 필요가 없음.
- 현대의학의 최신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사건, 전문성의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사건 등에서는 감정인의 지식과 경험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감정회신을 우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이나 의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개인 병·의원의 입장에서 실천되는 수준을 고려한 감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을 확대하여 선택 가능한 공급 풀 확대

■ 가능한 구체적인 확대방법

- 제1안 : 감정촉탁기관을 2차 병원 등까지 확대하는 방법

-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크게 ①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②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나눈다. 그리고 병상 규모에 따라 병원(한방병원 포함, 30개 이상 병상), 종합병원[100개 이상 병상, 7개 이상 진료과목(병상수 100~300)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병상수 300 이상)]으로 나누고, 종합병원 중 20개 이상 진료과목, 일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대학부속병원이 여기에 포함됨)으로 지정함.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함. 즉 의료법상 의료기관 구분은 규모 등에 따라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뉘고, 별도로 전문병원이 있음. 또한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이 있음.
- 현행 감정예규는 감정병원을 국·공립병원,⁹⁾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병원'(의원 제외), '치과병원(치과의원 제외)¹⁰⁾, '전문병원'(2차 병원)까지 확대하는 방법
- 또한 각 개별 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 등)를 감정촉탁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3기에서 이익집단의 성격상 문제 등이 언급됨(이미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전문위원

9) 의료법상 구분이 아니나 현재 모두 종합병원급 이상의 국·공립병원임.

10)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서 병원, 한방병원과 달리 30개 이상의 병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 의무기록실 등 의료법 시행부칙 제34조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어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 치과의원보다 그 규모가 크다고 보임, 치과병원 중 수련치과병원(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어 감정촉탁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회에 소속되어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있기도 함). 그 외 대한의학회, 정부산하 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에서 언급되었으나 대한의학회는 감정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함.

- 각 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익명 보장(감정의 명의 비공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와 같은 감정기관등 명단(감정촉탁기관 및 그 기관 소속 감정의) 안에 포섭되기 어려움. 대한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특수감정인 명단으로 관리해야 함.
- 김동원 상임전문심리위원이 2021. 10. 15.경 학회 집행부와 의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에 의하면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신체감정의 감정인 추천 가능하다는 의견임. 2021. 10.경 민사지원제1심의관실에서 검토한 보고서에는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법원에서 직접 촉탁되는 감정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다만 감정인 추천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제2안 : 3차 병원에서 퇴직한 교수 등 의사 개인을 직접 감정인으로 추가하는 방법

- 현재 임상을 담당하며 특정병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퇴직 의사들, 개인적으로 감정에 관심이 있으나 병원에서 추천되어 감정의로 등재되지 못한 의사를 발굴하여 직접 감정인으로 추가하는 방법(2021년 전국 207개 병원에 감정의 추천을 의뢰했으나 추천해준 병원은 69개에 불과하다고 함.¹¹⁾ 상임전문심리위원들 의견으로는 감정에 관심이 있으나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다고 함).
- 민사소송법상 '자연인인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 감정진술의 방식(제339조, 감정인신문 기일을 지정하는 방식)과 '단체, 기관 등'에만 할 수 있는 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절차가 이원화되고, 감정예규상 '감정인 명단'과 '감정기관등 명단'이 별도로 구분, 관리되며, '감정인 명단'에는 의사

11) 2021. 10. 민사지원제1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신체감정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추천기관 확대에 대한 검토' 참조



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의료감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감정예규 제14조를 개정하여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감정인 선정(민사소송법 제339조의 감정진술 방식)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감정예규 제14조 제1항의 삭제 혹은 단서 조항 추가), 감정예규의 명단 관리 등과 관련한 관계 규정(제5조, 제15조 등)의 수정 및 전산프로그램 정비 등을 하면, 의사 개인을 감정인으로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의사 개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신문기일을 진행하여 선서를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다른 감정에서 실무상 자연인인 감정인에게도 선서 없이 감정촉탁을 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됨(판례에 의하면 위법하지만, 실제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거의 없음. 문제를 제기하면 감정서를 서증으로 제출받으면 됨).
- 감정인에게 반드시 구두 선서가 필요한지(서면으로 갈음하는 방법 등), 감정촉탁을 반드시 단체, 기관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검토할 만함. 다만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료감정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검토·논의는 생략함.
- 제3안 : 감정예규상 이원화된 절차를 개정하고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모두 '의사'를 직접 감정인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방법
 - 현행 감정예규상 감정기관등 명단을 없애고, 1, 2차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 및 소속되지 않은 퇴직 의사 또는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 의사들(범위에 관해서는 검토하여 결정)을 직접 감정인으로 관리하는 방법
 - 의료감정을 원칙적으로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하게 한 것에 의사가 감정인 선서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감을 고려했다는 것 외에 다른 원인이 없어 보임. 이에 병원에 감정촉탁을 하면서도 그 병원 소속 의사도 선정되고 감정서는 '의사' 개인 명의로 제출되어 사실상 의사는 선서의무만 면제된 채 다른 감정의 감정인과 동일함.



- 선서를 위한 법정 출석은 최근 활성화된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선서를 서면으로도 갈음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음(실무상 다른 감정에서 ‘자연인인 감정인’에게 감정촉탁서를 보낼 때 그 감정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선서를 받는 관행이 있기도 함).¹²⁾
- 이렇게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각 병원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대한의사협회나 각 개별학회에서 추천을 받고 개별적으로도 신청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인의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음(실질적으로 제1, 2안의 통합 효과). 또한 추천절차의 어려움(사법지원실의 인적 자원의 한계, 소극적인 추천 등)을 각 과목별로 가장 큰 학회 등으로 단일화하여 해결할 수도 있어 보임.

■ 각 방법별 문제점

● 제1안

- 감정촉탁기관을 학회,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 물적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신체감정 수행은 어려움(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도 신체감정은 하지 않음. 다만 직접 환자를 면담하고, 장비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실상 신체감정과 동일한 질의를 진료기록감정으로 보내면 단순히 진료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형식의 감정은 하고 있음). 이익집단의 성격, 학회의 실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 문제 등이 대두됨.
- 감정촉탁기관을 2차 병원까지 확대하는 경우 감정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물적 규모가 있는지, 학식과 임상경험, 실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감정의 신뢰성 저하가 문제될 수 있음.

● 제2안

- 퇴직 의사들의 경우 물적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신체감정 수행은 어려울 수 있음. 신체감정을 진료기록감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함(현재 대한의

12) 다만 현행법에 관한 앞서 본 판례에 의하면, 감정인 선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다른 감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사협회처럼).

- 진료기록감정 관련,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임상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임. 그런데 현재 임상을 담당하지 않는 퇴직 의사가 적합한지 문제가 될 수 있음. 감정의 신뢰성 저하가 문제될 수 있음.
-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제3안

- 병원 소속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섞이는 등 감정인의 유형이 다양해져서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함.
- 감정인으로 등재할 의사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병원을 거치지 않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추천 등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음.
- 제1, 2안과 마찬가지로 문제점.
- 민사소송법상 선서가 필요한 것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선서를 거쳐서 감정을 하게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함(제2안도 마찬가지).

■ 신뢰성 우려 등에 대응할 절차적 장치 마련

- 감정신청을 채택하면, 감정촉탁을 보내기 전 또는 감정인을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2차 병원 소속 의사나 개인 의사들의 감정결과를 신뢰성 등을 이유로 다룰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음. 이런 취지에서 '인력풀' 확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함. 즉 풀만 늘려놓고 개별 재판부에서 당사자들 의견을 듣고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임.
- 현재는 감정신청을 채택한 후 감정병원과 감정의를 선정하면 비로소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을 확대하면 선정 전에 의견요청서 등의 양식으로 당사자들에게 개별 사건 유형, 내용 등에 따라 명단을 선택하게 함. 만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사건 내용과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도 감정신청서 채부를 전후하여 상대방에게 의견을 묻는 재판부가 다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내용을 조금 구체화하면 양식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임.

-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선택한 풀 내에서 무작위 선정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명단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즉 ① 제1안의 경우 3차 병원 명단(현재의 감정기관등 명단), 2차 병원 명단으로 명단을 구분하여 관리, ② 제2안의 경우 현재의 감정기관등 명단, 개인감정인 명단을 구분하여 관리, ③ 제3안의 경우 감정인별 유형을 구분하여, 3차 병원 소속 감정인 명단, 2차 병원 소속 감정인 명단, 무소속 감정인 명단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감정인 풀이 확대됨으로써 잦은 반송, 회신 장기화, 선정할 감정병원 또는 감정의가 없는 문제 등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음
- 사건 규모, 내용, 전문성의 정도 등 사건유형별로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이 구분됨으로써 3차 병원 소속 감정의의 부담을 낮춰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과 전문성, 풍부한 임상경험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음. 한편 개인 병·의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의 개인 병·의원의 임상에서 실천되는 수준을 고려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신체감정에서 감정예규에 정해진 감정료 외에 감정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 보임(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통상 병원비가 저렴하므로).

3) 구체적인 개선안 제안

■ 1안(감정촉탁기관을 2차 병원까지 확대) + 2안(의사 개인 추가)

- 현재 감정예규에서 감정촉탁기관을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① 일반병원, 치과병원, 전문병원(2차 병원)을 추가하고, ② 자연인인 감정인으로 퇴직 의사 등 의사 개인을 추가하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함.

- 1안으로만 갈 경우 3차 병원에서 퇴직한 후 병·의원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



하는 학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퇴직 의사들을 활용하기 어려움(이러한 퇴직 의사들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종종 있음). 2안으로만 갈 경우 신체감정에서는 확대의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음.

- 감정인선정프로그램의 명단은, ① 현재의 전산상 <신체/진료기록감정인선정> 부분에 있는 '감정기관등 명단'을 <3차 병원 명단>으로 하고, 그 외에 ② 일반병원, 치과병원, 전문병원등을 감정촉탁기관으로 하는 <2차 병원 명단>과 ③ 퇴직 또는 개별의사 등을 관리하는 <의사 명단>으로 3종류로 명단을 구분하여 관리함.
- 감정신청서 접수 후 당사자들에게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송달하여 명단을 선택하게 함(선택 방식은 모든 명단 무방/ 2차 병원 명단까지 무방/ 3차 병원 명단만 가능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만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사건 내용과 양 당사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확대, 추가되는 2차 병원과 그 소속 의사, 의사 개인에 대해 안내와 교육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감정예규 제16조에서 정한 명단 조정을 위해 각 법원에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함.

▣ 확대 가능한 2차 병원의 범위 : 2차 병원 명단 관련

- 2차 병원은 기본적인 신체감정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명단에 등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2차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상 방사선 장치를 갖추고 있기는 함. 다만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건이 상당수이므로, 정밀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감정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3차 병원에서 수련기간(인턴, 레지던트)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한정하고,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소속 의사에 한하여 감정의로 추천하도록 제한할 필요 있음.

- 명단의 작성, 관리 등

- 2차 병원 명단은 종전 3차 병원 명단 추천 방식과 동일하게, 법원행정처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춘 병원장에게 그 소속 의사들을 추천 의뢰하여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의'로 등재함.

- 명단의 작성 및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확대 가능한 개인 의사 범위 : 의사 명단 관련

- 전문의 자격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임상경험만 있으면 감정인 등재를 하는 방법, 3차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사 자격 있는), 상임전문심리위원 등에 개별 질의한 내용, 의료감정팀 내부 상의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3차 병원에서 수련기간(인턴, 레지던트) 제외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통상 대학병원에서 부교수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이 정도라고 함).

- 이처럼 제한할 경우 사실상 현재 3차 병원의 감정의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욱 전문성이 있을 수 있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 향후 운영 경과를 보아 필요할 경우 기준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풀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 개별의사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감정만 가능할 것임. 재판부에서 이를 간과한 채 신체감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정의뢰를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필요 있음. 신청을 받을 때 신체감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명단의 작성·관리 등



- 병원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함. 현재 다른 감정에서 감정인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면 될 것임.
- 신청자에 대해 관련기관에 경력조회 등을 실시하여 등재하고, 선정 후에도 감정예규 제16조에 따라 명단 조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4) 보론 : 지역별로 관리하는 감정기관등 명단 통합 문제

▣ 감정기관등 명단을 의료권역을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 등

- 현재 감정기관등 명단은 이를 지역별로 관리하면서 각 법원별로 관할구역 명단에서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의를 선정하게 하고, 다만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거주지 관할법원의 명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감정예규 제15조 제1항 참조).
- 이를 통합하여 관할구역을 없애거나 넓히면 감정병원 및 감정의 선정 대상 풀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음. 특히 일부 지방 소재 법원은 관할구역 내 감정병원과 감정의가 한정되어 그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별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관할구역이 아닌 곳의 특정병원을 선정할 수는 있으나 감정병원에서 관할이 아니라고 반송하는 사유가 됨.
- ① 관할구역의 구분을 없애는 방법,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의료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정하는 방법, ③ 지방 소재 법원 재판부가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감정병원 및 감정의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서울, 수도권 소재 감정기관등 명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④ 감정촉탁기관마다 대상 관할에 특정 지방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지역 구분 없이 통합할 경우 현재의 무작위 선정 방식에 의할 경우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환자 측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병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무작위 선정이 아닌 재판부에서 임의로 혹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병원으로 특정하여 선정할 경우 공정성 등에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와 각 명단의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전국의 모든 권역을 통합하기는 어렵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의료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 제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임.

나. 감정료 개선방안

1) 제안배경 등

- 현행 감정예규는 의료감정료를 과목당 신체감정의 경우 40만 원,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60만 원으로 정하면서(2017년에 2배로 인상된 금액),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하고, 감정서 제출의 신속성, 감정의 문항 수,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정보완 또는 사실조회 실시 여부 등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9조).
- 반면 측량감정, 시가등의 감정, 공사비등의 다른 감정의 경우 감정예규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선정된 감정인으로부터 별도 기준에 따른 감정료 견적을 제출받아서 감정료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임. 그런데 별도 기준 자체가 고액이고, 명확히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감정료가 과다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후보 감정인을 선정하여 예상감정료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실무상 널리 활용됨.
- 다른 감정과 비교할 때 의료감정료는 2017년 증액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그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었음. 이러한 낮은 감정료는 감정병원 및 감정인가 감정절차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전혀 주지 못하여 감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 됨.
- 한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경우, 신체감정의 경우 감정예규에 따른 감정료 외에 감정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료, 입원료, 장비이용료, 재료대 등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이 모두 비급여대상이어서 실제 감정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대한의사협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감정료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고, 통상 법원에서 정한 감정료보다 훨씬 고액을 청구함.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감정료를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하여 정하고 있고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고액임[미국의 경우 사전검토, 예비적 평가의 경우 시간당 400~500달러, 법정출석 증언의 경우 시간당 500달러 추가. 일본의 경우 서면감정 60만 엔, 복수감정, 콘퍼런스 감정은 1인당 20만 엔]. 독일에서는 시간당 감정료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신체감정 시간당 105유로) 미국, 영국, 일본의 감정료보다 낮음(우리나라 의료감정에서는 시간당 감정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독일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다른 감정의 감정료(다만 문서등 감정료 제외), 의료감정이 많이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료, 외국의 감정료 등과 비교할 때, 현행 감정예규에서 정한 의료감정료는 저렴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그 수행하는 업무와 들이는 노력에 비례하여 상당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증액하면서도, 실제 비용을 지출해야 감정을 받을 수 있는 환자나 피해자 측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감정절차 지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의료감정의 감정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가능한 개선방법

■ 제1안 : 감정료를 단순 증액하는 방법

- 현재 과목당 신체감정료 4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 60만 원을 일정 금액으로 단순 증액하는 방법.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전체 11명 중 7명이 증액에 찬성했고, 증액 정도로 30%~50% 증액, 20% 이상 증액, 신체감정료만 과목당 50만 원으로 증액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문제점 등 검토

- 현재 감정료는 2008년에 감정예규 제정 후 9년이 지난 2017년에 2배로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 후 현재까지 약 6년 정도 지났을 뿐이어서 물가상승률이 종전보다 대폭 상승했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한 2017년 증액 시처럼 2배까지 증액하기는 어려워 보임.
- 대폭 증액하지 않는 이상 감정병원과 감정의가 감정절차에 적극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임. 즉 감정절차 지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감정료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실제 소송 과정에서 감정료를 지출해야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주로 환자, 피해자 측에 부담이 되어 사실상 불가능함. 추후 소송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일단 지출해야 감정을 받을 수 있음(의료감정이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통상 청구금액 대비 인정되는 금액 비율이 낮아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률이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이기도 함).

- 제2안 : 감정료를 정하지 않고 복수의 후보 감정병원 및 감정의로부터 예상 감정료를 받는 방법

- 다른 감정, 특히 공사비등 감정이나 전문 특수분야 감정처럼 감정료가 고액인 경우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처럼 복수의 후보 감정병원 및 감정의를 정하여 예상 감정료를 받은 후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법.
- 문제점 등 검토
 - 공급풀이 적고 잦은 반송 등으로 한 곳의 감정병원 및 감정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수의 후보 감정병원 및 감정의를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찾는 과정에서 감정절차 지연이 더욱 심화될 우려 있음.
 - 통상 의료감정에서 첨부되는 진료기록부등(각종 영상자료 포함)이 방대한 경우가 많고, 감정료 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제공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복수 후보 감정병원에 송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특히 영상자료는 복수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후보 감정병원에 보낸 후 다시 반송받고 다시 다른 후보 감정병원에 보내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야 함).

- 아무런 기준 없이 개별 감정병원 및 감정의가 자의적으로 감정료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다른 감정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 지침이나 기준 등이 있어서 이에 따라 감정료를 산정하게 되어있음 (예 : 공사비등 감정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중 감정에 관한 업무의 대가규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산출된 금액 + 여비). 따라서 일응의 기준은 정해야 하는데,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 변호사보수기준을 참조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변호사 업무와 의사의 감정 업무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3안 : 감정료 부과방식을 세분화하는 방법

- 감정사항의 질의문항 수, 감정촉탁기록의 분량, 추가 사실조회 횟수 등에 따라 감정비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문제점 등 검토
 - 감정촉탁을 할 때 첨부되는 진료기록부등의 첨부자료 분량에 따라 감정료를 정하는 방법의 경우, 실무상 개별 감정촉탁 시마다 일일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감정료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음.
 - 추가 사실조회 횟수 등에 따라 감정료를 정하는 방법의 경우, 추가 사실조회 등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가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어도 감정료 부과방식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려움. 현재 실무상 추가 보완이 감정촉탁방법 또는 사실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고 있음.



- 감정료 부과방식을 변경할 경우 질의문항 수에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 기타 : 신체감정에서 입원료, 장비이용료, 재료대 등 실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 관련 개선방안

● 문제점, 검토 배경 등

- 신체감정에서 입원료, 장비이용료, 재료대 등 실비는 감정료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산입됨. → 대법원판결(2000. 5. 12. 선고 99다68577) :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 신체감정촉탁서에 신체감정료와 별도로 이러한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직접 납부받은 경우 해당 상세 내역서를 감정서와 함께 제출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있으나(감정예규 제44조 제2항, 별지1. 신체감정촉탁서 양식 참조) 실제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임.
- 이러한 실비를 법원에서 예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감정을 받는 환자 측은 병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소송비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료가 고액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이는 법원에서 직접 통제 가능한 비용은 아님.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그 내역서 등 자료 구비의 복잡함 등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임. 또한 통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의료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이 높지도 않아서 소송비용으로 보전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신청인이 지출해야 감정을 진행할 수 있어서 부담이 됨.

● 감정예규 등에 감정료의 일종이라고 명시하는 방법



- 감정예규에 이러한 실비를 감정료의 일종이라고 명시하고 감정병원 및 감정의로부터 반드시 내역서를 제출받으면, 이러한 실비가 모두 비급여항목이어서 고액이라는 의견 관련 일정 부분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실제 이러한 실비가 모두 비급여항목이라면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급여항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은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심평원)과 협조하여 검토해야 하고, 법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 한편 위와 같이 명시함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됨 : 법원 감정료가 고액이라는 오해의 가중, 병원에서 제출하지 않는 내역서를 법원에서 받기가 어려운 문제, 신체감정비용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하는 경우 구조비용이 구조 결정을 할 때 예상하지 못한 금액으로 확대될 우려 등
- 신체감정촉탁서 등에 실비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
-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보낼 때 진찰료, 검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실비는 소송비용의 일종으로 추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위와 같은 오해와 불만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실효성이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임.

3) 구체적인 개선안 제안

▣ 질의문항 수에 따라 감정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감정료 부과방식 개편

- 일정한 기준문항 수와 기본감정료를 정하고, 질의문항 수가 기준문항을 초과하는 경우 문항당 금액을 정하여 초과하는 문항 수에 비례하여 초과감정료를 기본감정료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감정료 부과방식을 개편할 것을 제안함.
- 예컨대 기준문항 수 20문항까지 기본감정료를 60만 원(현재 진료기록감정료)으로 하고, 질의문항 수가 40문항일 경우 기준문항을 초과하는 20문항에



대해서는 문항당 3만 원씩 초과감정료 합계 60만 원(= 20문항 × 3만 원)을 가산하여 전체 감정료를 120만 원(= 기본감정료 60만 원 + 초과감정료 60만 원)으로 하는 것

■ 제안 이유, 효과 등

- 감정료의 증액만으로 현재의 감정절차 지연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음(3기에서도 일부 위원이 지적, 4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인이 지적, 3기 논의 후 사법행정 자문회의에서도 지적되는 등 계속 언급되는 내용임).
 - 그럼에도 현재의 감정료가 다른 감정과 비교하여 저렴한 것은 사실이고, 의료감정료의 증액 필요성은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음. 특히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상당수 감정의가 감정서를 보내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검토한 진료기록 내용의 방대함, 다수의 질의 문항, 다른 감정과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60만 원은 그 수고 및 노력과 비교할 때 낮다는 공감대가 있으므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감정료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신체감정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감정료 외에 병원에 지출하는 입원료, 장비이용료, 재료대 등의 실비임. 위와 같이 부과방식을 개편할 경우 신체감정의 경우 통상 질의문항 수가 일정 문항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감정료가 추가 가산되는 경우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감정료 증액으로 인한 환자 측(변호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위와 같이 감정료를 부과하면, 특히 진료기록감정에서 진료기록부의 단순 번역을 요청하는 질의, 진료과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묻는 탐색적인 질의, 중복되는 질의 등 부적절한 질의사항을 통제하여 감정절차 지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감정절차 지연, 특히 감정병원에서 방대한 질의사항, 답변하기 곤란한 부적절한 질의사항을 보고 반송하는 것을 줄이고, 정리된 질의사항에 따라 회신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 등



-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문항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감정료를 청구하고 있음

▣ 부과방식의 구체적 개편안(예시)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진료기록감정만 시행)의 경우
 - 1~10문항 : 60만 원 / 11~15문항 : 70만 원 / 16~20문항 : 80만 원 / 21문항 이상 : 80만 원 + 추가 문항당 5만 원 추가
 - 피감정인이 복수이거나 감정 대상 진료기록이 복수인 경우, 위 감정료도 복수로 계산. 진료기록에 대한 난이도, 감정소요 시간에 따라 감정료 증액 가능
- 실무상 의료소송 등에서 질의문항 수 등
 - 신체감정의 경우 손해배상재판실무편람에서 별지로 첨부한 신체감정할 사항에 기재된 질의문항 수가 총 11문항임(부속 문항 별도 산정 시 18문항, 단 부속 문항이 진료기록감정에서처럼 실질적으로 별개 문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신체감정의 경우 통상 질의사항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질의문항 수가 20문항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의료소송 합의사건의 경우 질의문항 수가 보통 40문항을 넘고, 60문항 이상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기준문항 수 및 기본감정료(현재 감정료를 유지할지 다소 증액할지 등), 기준문항 수 초과 시 문항당 가산할 금액 등에 대해 논의하여, ① 기준문항을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모두 20문항으로, 기본감정료를 현재대로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으로 하고, ② 문항 수가 21문항부터 60문항까지(추가문항이 1~40문항)는 추가문항에 비례하여 문항당 일정 금액을 가산하며, ③ 60문항을 초과할 경우(추가문항이 41개 이상) 문항당 가산하는 일정 금액을 더욱 높게 정하는 것으로 개편안을 제시함(아래 표 참조).



- 최초 초과감정료를 문항당 1만 원으로 하되, 질의문항 수가 60문항을 초과할 경우 추가 가중액을 정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논의했으나, 증액 효과가 거의 없어서 감정료 부과방식 변경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대의견이 있고, 현재 실무상 진료기록감정 시 감정의의 요청에 따라 증액된 금액(현 감정에 규상 감정료의 2배인 120만 원까지)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법관 중에는 현 감정료가 지나치게 저렴하여 일괄하여 2배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초과감정료의 문항당 금액을 정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은 개편안을 기준으로 법관 및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현행	개편안(예시)
신체 감정료 (감정예규 제39조 제1항, 제3항)	과목당 40만 원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과목당 감정료 를 합산함 -재판장의 재량 증액 가능	[기본감정료] ■ 기준문항(질의문항) 20개 이하: 40만 원 [초과감정료] ■ 초과문항이 1~40개(질의문항 수 21~60개)인 경우 : 초과문항 1개당 ()만 원 ■ 초과문항이 41개(질의문항 수 61개) 이상인 경우 : 초과문항 1개당 ()만 원 - 과목당 감정료 합산, 재판장의 재량증액 규정은 현 행대로 유지
진료기록 감정료 (감정예규 제39조 제1항, 제3항)	과목당 60만 원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과목당 감정료 를 합산함 -재판장의 재량 증액 가능	[기본감정료] ■ 기준문항(질의문항) 20개 이하: 60만 원 [초과감정료] ■ 초과문항이 1~40개(질의문항 수 21~60개)인 경우 : 초과문항 1개당 ()만 원 ■ 초과문항이 41개(질의문항 수 61개) 이상인 경우 : 초과문항 1개당 ()만 원 - 과목당 감정료 합산, 재판장의 재량증액 규정은 현 행 규정 유지

- 진료기록감정에서 위 개편안에 따라 () 안 금액(1문항 당 초과감정료)을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로 하여 각각의 경우에 전체 질의문항 수 20문항부터 60문항까지의 총 감정료 산출액 예시



	추가 1개당 초과감정료	전체 질의문항 수에 따른 총 감정료 산출액				
		20문항 (0)	30문항 (10)	40문항 (20)	50문항 (30)	60문항 (40)
①	1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②	2만	60만	80만	100만	120만	140만
③	3만	60만	90만	120만	150만	180만
④	4만	60만	100만	140만	180만	220만
⑤	5만	60만	110만	160만	210만	260만

※ 문항 수 부분의 () 숫자는 20문항을 초과하는 문항 수

※ 총 감정료 = 기본감정료(60만 원) + 초과감정료(1문항당 초과감정료 × 20문항 초과 문항 수)

다. 기타 세부적 개선방안

1) 감정서 회신기한 명시

- 감정촉탁서를 보낼 때 회신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자는 안(3기 전원 찬성).
- 감정예규에 선언적 의미로라도 기한을 명시할 수 있음.
- 감정예규에 명시가 없더라도, 현재 감정촉탁서 양식의 "... 촉탁하오니 그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을 "...촉탁하오니 (언제까지) 그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하여 촉탁서 생성할 때 일정기간을 선택하여 생성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별지1. 신체감정촉탁서 양식 참조). 현재 양식에서도 재판부가 알아서 문장과 일자를 삽입하여 편집할 수는 있음.
-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임. 감정예규에 회신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감정료 증·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잘 활용되지도 않고 현재의 여건에서 실효성도 없어 보임. 행정적 제재규정 또는 보상규정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듯하고 관련하여 병원의 인증평가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검토해볼 만함(⇒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 필요하여 감정병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어 보임. 구체적인 검토는 시간



상 한계 등으로 하지 못함)

- 감정촉탁서에 회신기한이 지정되어 그로 인해 감정병원과 감정의가 일정한 내 감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감정을 하기를 더 꺼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고민해보아야 함.

2) 표준감정신청서 양식 마련

- 신체감정신청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정형화된 표준양식을 만들자는 안(3기 전원 찬성).
-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경우 사건별, 진료과목별로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초기에 쟁점이 되는 부분도 불분명한 등으로 정형화된 양식을 만들기 어려움.
- 신체감정신청서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전담부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손해배상실무편람에 부록으로 들어있음) 이를 다른 법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려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듯함.
- 개별항목들을 단순히 정형화하여 나열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고(이미 대부분 당사자들이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서 그에 맞추어 신청함),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설명 문구(감정의가 참조할 수 있는 내용, 예컨대 향후치료비의 경우 발생시점 등)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어 보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현재 맥브라이드표의 사용을 KAMS 기준으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이 정립되기 전에는 새로 양식을 만들기 어려워 보임.

3) 감정서 접수통지 등을 받는 방안, 세부과목 정리 등

- 감정병원이 감정촉탁서를 받으면 이를 받았다는 접수통지 또는 감정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수락통지 등을 하게 되면 감정서를 송달받은 감정병원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반송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임.



- 양식을 마련하여 감정촉탁서를 보낼 때 함께 첨부하여 보내면 됨. 다만 감정병원 측의 협조가 필요함.
- 감정촉탁을 할 때 세부과목의 특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정 없이 감정병원만 선정하여 보내면 감정병원에서 적절한 과목을 확인하여 감정의를 지정하는 방안, 세부과목을 임상현장의 세부과목에 맞추어 수정하는 방안 등 세부과목 관련 문제도 검토가 필요함(⇒ 세부과목 등 문제도 의료감정 개선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시간상 한계 등으로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못함).

라.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등

1) 논의 경과

- 의료감정의 개선방안으로 검토·논의할 내용이 방대하여 의료감정팀에서 1차 회의 당시 발제 후 중점적으로 검토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제안한 중점 제안방안의 내용으로 연구·검토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물어서 위원들 다수가 찬성함.
- 이후 중점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였고, 구체화한 내용마다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구체화한 개선방안으로 법관과 변호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결과를 참조하여 4차 회의 시 ①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 확대, ② 감정료 개선방안의 위 각 '구체적인 개선안 제안' 내용에 대해 찬부를 의결함

2) 논의결과

▣ 3차 회의에서 정리·보고된 분과위원회 위원들 의견조회결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 확대방법 관련]



◎ 감정촉탁기관을 2차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제1안)과 ② 감정촉탁기관과별개로 3차 병원에서 퇴직한 교수 등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 의사 개인이 감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제2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 : 응답자 7명 중 7명(위원 수 11명, 이하 같음)

◎ 확대하는 2차 병원의 소속 의사와 감정인으로 등재되는 의사 개인의 자격을 “3차 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임상경험이 10년 이상인 의사” 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 : 응답자 수 5명 중 5명

[감정료 개선방안 관련]

◎ 기준문항 수를 정하고 그 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액수를 가산하는 방안에 동의 : 응답자 수 7명 중 6명

- 기타 감정료 단순증액과 기준항목 수 초과 시 가산안 모두 동의 : 응답자 수 7명 중 1명

◎ 기준문항 및 기본감정료, 증액방법에 대하여 기준문항 20문항에 대해 기본감정료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를 정하고, 기준문항 초과 1문항당 1만원의 초과감정료 부과, 추가문항이 60문항(전체문항 기준 80문항)을 초과할 경우 초과문항에 대해 가중하는 방식에 대한 동의 : 응답자 수 5명 중 5명

[기타]

◎ 신체감정촉탁서에 실비에 관한 소송비용 안내 문구 추가

- 찬성 : 응답자 수 7명 중 6명

◎ 감정서 회신기한 명시

- 찬성 : 응답자 수 7명 중 5명 - 반대 : 응답자 수 7명 중 1명

◎ 감정서 접수통지 양식 마련하여 감정촉탁서 보낼 때 함께 송달

- 찬성 : 응답자 수 7명 중 6명

▣ 4차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위원들 의결결과(11명 중 10명 출석)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 확대 관련]

◎ 현행 감정예규에서 의료감정을 원칙적으로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면



서 감정축탁기관을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한정된 것에서, ① 감정축탁기관을 ‘병원(의원 제외), 치과병원(치과의원 제외), 전문병원(2차 병원)’까지 확대하고, ② 감정축탁기관이 아닌 감정인으로 ‘퇴직한 교수 등 개별의사’를 별도로 관리하되, 의사의 자격(감정축탁기관인 경우 그 소속 의사)을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로 제한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9명이 찬성함(1명은 ①은 찬성하나, ②까지 확대·추가할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감정료 개선방안 관련]

◎ 현행 감정예규의 감정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출석 위원들 10명 모두 찬성함
◎ 질의문항 수에 따라 감정료 부과방식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출석 위원들 10명 모두 찬성함

◎ ① 기준문항 수 20문항, 기본감정료 과목당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 ② 총 질의문항 수 21문항부터 60문항(초과 문항 1문항부터 40문항)까지 가산되는 1문항당 초과감정료 3만 원, ③ 총 질의문항 수 61문항(초과 문항 41문항)부터는 가산되는 1문항당 초과감정료 5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출석 위원들 9명이 찬성함
- 1명은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 찬부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
- 변호사 위원 1명의 경우 찬성은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액 정도가 전체적으로 너무 적다는 의견을 밝힘

마. 법관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법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23. 7. 20.부터 2023. 7. 26.까지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 처장·차장을 제외한 전국 법관(총 3,108명) 대상 감정축탁기관 및 감정인 확대와 감정료 부과방식 개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32명(10.7%)이 응답
-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별지2. 법관 대상 설문조사결과 분석과 같음.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23. 7. 20.부터 2023. 7. 26.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상 감정촉탁 기관 및 감정인 확대와 감정료 부과방식 개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15명이 응답
-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별지3.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같음.

■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인 풀 확대 관련 설문조사결과

- 감정인 풀 확대 필요성 : 다수가 공감함(법관 78.6%, 변호사 86.7%)
- 2차 병원(단, 3차 병원에서 수련기관 제외 10년 이상 임상경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 다수가 공감함(법관 83.9%, 변호사 87.7%)
- 개인 의사(단, 3차 병원에서 수련기관 제외 10년 이상 임상경험 있는 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 다수가 공감함(법관 74.3%, 변호사 77.8%)

■ 감정료 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현행 감정예규의 감정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다수가 공감함(법관 93.2%, 변호사 64.8%) → 변호사의 공감률이 법관보다 떨어짐.
- 질의문항 수에 따른 감정료 부과방식 개편안 : 다수가 공감함(법관 84.7%, 변호사 72.7%)
- 기준문항 수(20문항)와 기본감정료(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가 적절한지 : 법관 중 55.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적절하다는 답변 34.8%), 변호사 중 63.5%가 적절하다고 답변(적절하지 않다는 답변 33.3%). 법관 의견 중 10문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음. ⇨ 양측의 의견을 통합하고, 신체감정의 경우 감정료 증액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를 살리려면 기준문항 수와 기본감정료는 위원회 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초과문항 40문항(질의문항 60문항)까지 가산되는 초과감정료 : 법관(비율이 높은 순서 5만 원 → 3만 원 → 2만 원 → 4만 원 → 1만 원, 기타 제외), 변호사(비율이 높은 순서 2만 원 → 3만 원 → 1만 원 → 5만 원 → 4만 원, 기타 제외) ⇨ 법관 측과 변호사 측 의견이 가장 갈리는 부분임. 법관 측 의견의 경우 기준문항 수와 기본감정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하에 이 부분에서 금액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설문결과의 왜곡 등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할 듯). 양측의 의견을 통합하면 종래 위원회에서 논의한 1만 원이 아닌 3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초과문항 41문항(질의문항 61문항)부터 가산되는 초과감정료를 더 증액 : 다수가 적절하다고 답변함(법관 63.5%, 변호사 61.9%).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서는 질의하지 않음.

3. 중장기 개선방안 : (가칭)감정위원회(혹은 감정센터, 감정단, 감정기구) 등 설치방안

가. 제안배경

■ 감정절차 지연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 감정절차 지연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감정을 하는 감정병원 및 감정의의 직무상 본질적이고 주된 업무는 환자의 치료이고, 감정은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데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로 인해 감정병원 및 감정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유인이 없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원에서 감정병원 및 감정의를 통제·관리하기가 어려움.
- 또한 의료감정제도는 의료제도와도 맞물려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적·비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움.
- 이에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들과 분리되어 전문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상현장의 병원 및 의사들과 교류·소통할 수 있는 법원



측 전문가로서 의사가 필요함.

▣ 유사한 개선방안, 외국의 유사 제도 등 참조

- 유사한 개선방안으로 종래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스케줄러 관여안', 2018년경 법원행정처에서 검토된 '감정센터 설치방안' 등이 있고, 유사하거나 참조할 만한 외국 제도로 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 독일의 '감정위원회', 미국에서 전문감정의를 배출하는 제도 등이 있음.
- 위와 같은 기준에 논의된 개선방안과 외국 제도 등을 검토, 참조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우리 절차에 맞게 감정절차 지연 및 감정의 공정성·신뢰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안함.
- 특히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스케줄러 관여안'을 추진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내려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차라리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같은 의사들을 감정위원회나 감정기구의 위원으로 선발하여 명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낫다는 점에 착안함.
- 또한 공동세미나에서 유사한 내용의 개선방안(감정단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시 논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함.

▣ 설문조사결과 다수 법관들이 유사한 개선방안 제안

- 이번 2023년 7월에 의료감정 개선방안에 대해 단기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기타 개선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으로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공적 기관 등의 설립"을 언급한 의견이 다음과 같이 상당히 많았음(특히 법관들 의견).
- 법관들 의견 : ① 감정인 명단 확대에 공감하나 시행한다고 해도 병원에서 명단 등재에 소극적인 경우 큰 의미가 없고, 적극적으로 유일한 방안이 없음. 현재 의료감정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법원이 직접 감정



인을 선발하여 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임. ② 국가적으로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중립적으로 빠른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료감정원의 설립 추진을 위하여 국회 및 정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④ 의료감정원 같은 공적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았으면 함. ⑤ 국가에서 감정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주면 가장 좋겠음. ⑥ 의료감정원 같은 기관을 만들어 의료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 면에서 더 바람직한 방안임. ⑦ 중장기적으로 법원 자체에 또는 역량이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음. ⑧ 국가 또는 법원이 설립하는 법의학연구소 또는 법의학감정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⑨ 국과수처럼 국립 의료감정센터를 설립하여 해당 기관에서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안. ⑩ 감정인 풀 확대에 매우 반대하고, 의료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적, 독립적인 국가 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이 옳음. 등등(그 외도 상당히 많음).

- 변호사들 의견 : ① 감정을 전담하는 의료기구를 설치하는 안도 검토해달라. ② 전문감정인을 육성하여(자격 부여 등)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법원에 소속시켜 감정시키는 방법을 제안함. ③ 신체감정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봄.

나. 기존에 제안된 유사한 개선방안, 외국의 유사 제도 검토

1)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스케줄러 관여 안(3기 논의 내용)

■ 필요성, 개선안 개요, 도입가능성, 문제점 등은 앞부분 '기존에 논의되거나 검토된 개선방안들'의 해당 부분 참조

■ 추가하는 필요성, 효과 등

- 의료감정에서는 사건에 맞는 적절한 감정과목(세부과목)을 찾고, 그 감정과목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찾기부터 쉽지가 않음. 현재는 이를 지정된 명단 안에서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공정성은 담보될지라도 실제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지정된 명단 안에 적절한 의사가 없는 문제, 당사자가 신청한 감정과목이 사안과 맞지 않는 문제 등이 생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병원 및 감정의를 찾는 것부터 전문가의 관여가 필요함. 해당 개선안은 이 부분에서 필요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이는 일본에서 감정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의사관계소송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정인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당하는 것과 취지가 같음. 다만 의사관계소송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 위원은 일본에서 운영되는 전문위원(우리의 전문심리위원과 유사)과 구별됨.

■ 담당하는 역할 관련 문제점

- 감정진행단계를 검토하고 지연사유를 파악하는 역할 관련 : 재판장의 역할을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상임전문심리위원회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임. 만일 이 부분에 역할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상임전문심리위원이 단순히 절차적인 관리자로 전락할 수 있어서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되기 어렵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업무 만족도 저하가 우려됨.
- 감정가능성, 감정사항 확정, 감정서 도착 후 보완 필요 여부 등 확인을 하는 역할 관련 : 모두 변론주의 위배 위험성이 있고 당사자가 반발할 수 있음. 재판부와 상의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결국 재판장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재판장의 부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임.
- 또한 감정병원과 감정의를 찾는 역할 관련 : 이를 상임전문심리위원회에 맡길 경우 공정성의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관련 문제점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애매함. 현재도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의견서 등은 감정서처럼 증거가 되지 않음.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 없이 법관이 구두로 질의하는 창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음.



- 2023. 1. 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는 의료감정 제도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하면서 상임전문심리위원 재판절차 개입폐지를 요구하기도 함(지정된 건수 대비 의견서 제출 건수가 적다는 내용).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변호사 의견 중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폐지하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게 있는 등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관해 법관들과 변호사 사이 의견의 괴리가 있음.
- 변호사 측 의견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감정신청사항의 검토와 수정·보완, 감정기관 및 감정의 선정, 도착된 감정서 검토 후 보완 필요 여부 확인 등까지 맡길 경우,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불만과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현실적 여건 관련 문제점

- 현재 상임전문심리위원 규모(7인)로는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상임전문심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의견임. 몇몇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사건(사안이 복잡하고 회신이 장기화되는 사건) 혹은 특정 과목 사건(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 등에 한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 검토결과

- 특정 사건만 선택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있으나, 감정절차의 장기화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려움.
- 특정 사건을 어떻게 정하고 구분할 것인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함.

2) 2018년경 검토된 감정센터 설치방안

- 2018년경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감정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법관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검토에 그친 바 있음.

■ 설치방안의 개요



- 감정센터의 구성(상임감정인 명단과 현행 감정인 명단으로 이원화) : 법원에 상근하면서 감정 업무를 전담하고 다른 감정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상임감정인,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와 법원 직원으로 구성하되,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임감정인을 배치할 수는 없으므로 상임감정인 명단과 현행 감정인 명단으로 이원화.
- 특히 문제가 되는 의료감정 및 공사비 감정에 상임감정인 배치
 - 그중 의료감정의 경우 의료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기록감정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여 선발하는 것 검토
 - 신체감정의 경우 당장 도입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대학병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당사자가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감정센터에서 관독하는 업무는 가능함.
- 상임감정인은 일반감정인과 감정절차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업무도 수행: 일반감정인 명단 등재·삭제, 대학병원이나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약체결 등의 대외업무, 개별 사건에서의 감정 진행 상황과 대응 등의 관리

■ 기대효과

- 상임감정인에 대한 감정인신문 활성화로 서면공방의 한계나 문제점 완화
- 건설감정의 경우 감정료 인하 요인 발생
- 감정지연 문제 해소 : 상임감정인의 감정 업무 전담으로 신속한 감정 가능하고 일반감정의 경우에도 감정센터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감정인에 대한 교육 등 관리 강화 : 소수의 상근감정인이 많은 감정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감정인 자격 유지

■ 검토, 시사점 등

- 위 개선방안은 의료감정뿐 아니라 공사비등 감정을 동시에 검토한 것임. 그



런데 공사비등 감정은 과도한 감정료와 감정의 질 개선에, 의료감정은 감정 절차 지연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있어서 논의 지점이 달라 함께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음.

- 위 개선방안은 의료감정뿐 아니라 모든 감정분야를 대상으로 검토하면서, 상임감정인을 배치하는 감정센터와 일반감정으로 이원화하여 검토되었음. 감정 절차 지연의 해결보다는 감정의 질 개선에 관한 고민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됨.
- 초기 검토에 그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나 전문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인이 필요하여 그러한 감정인을 법원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가칭)감정위원회 설치방안과 맥락을 같이함. 기대효과에서 감정료 인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정위원회 설치방안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함.

3) 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

■ 구체적인 내용은 앞부분 외국의 의료감정 관련 제도의 해당 부분 참조

■ 검토, 시사점 등

- 일본은 우리처럼 감정병원과 감정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사건마다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정인 후보자 추천을 함으로써 감정인 선정과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2001년경 도입된 것으로 보임.
- 의사관계소송위원회는 의학자·의사, 변호사, 전직 판사, 일반전문가 12인으로 최고재판소(대법원) 산하에 구성되어서 법원 측 기구임. 위원회 소속 의사가 법원에 채용된 현직 임상 의사인지, 위원들이 상임 위원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으나 상임 위원들이므로 보임.
- 역할은 감정인 후보자 선정만 담당함. 다만 위원회가 의학계와 법조계 사이가교역할을 하여 의사와 의료단체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각 지역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의



료계와 법조계 사이 소통 부족 등이 많이 지적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원에 소속되어 이러한 가교역할 등을 하는 전문가(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4) 기타

- 독일에도 ‘의료감정위원회’가 있음. 다만 이는 법원 측 기관이 아닌 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의료과실 유무만 판단하는 기관임. 구체적인 구성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단 또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과 유사해 보임(독일에도 별도로 의료중재원이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각 주의 의사회와 만든 조직이어서 우리와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감정인제도가 아닌 전문가 증언제도이기는 하지만, 전문가 증인의 자격과 신빙성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료감정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감정의를 배출하고, 교육과 시험, 평생 인증제도 등을 운영함. 임상현장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와 별도로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전문감정의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다. (가칭) 감정위원회 설치방안의 개요

■ 감정위원회의 구성

- 대법원 소속 또는 대법원 산하 조직이나 기구로 설치함(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는 최고재판소에 설치되어 있음). 독자적인 조직이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법원의 통제·관리권이 효율적으로 미치게 하려면 대법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단과 다를 바 없음.
- 일정한 학식과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가(의사)를 다수 선발하여 ‘감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감정위원의 업무 등을 총괄할 법관 1명 등과 함께 ‘감정위원’으로 위촉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단의 경우 법조인과 소비자대표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에는 변호사, 일반전문가가 포함되



어 있는데, 이를 참조하여 업무의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소비자대표 등을 함께 위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또한 감정위원회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 직원 등도 감정위원회에 배치함.

- 의사인 감정위원의 경우, 법원감정시스템상 진료과목은 크게 14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1과목당 최소 1명의 감정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진료과목 감정위원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도록 감정 수요가 많은 신경과, 정형외과 감정위원은 복수로 선발하는 등으로 약 20명 규모로 구성함.¹³⁾ 감정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에 대비하여 감정위원 후보자 풀을 두거나 예비 감정위원을 선발해 둘 필요가 있음.
- 의사인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은 현재 감정병원의 감정결과와 유사한 정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임상경험을 요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¹⁴⁾ 그러한 요건에 맞는 인원의 선발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함.¹⁵⁾

■ (가칭)감정위원회의 업무처리 절차 등 개관

- 당사자로부터 해당 사건 재판부에 의료감정신청서가 제출되어 채택되면 모두 감정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함.
- 감정위원회는 소속 감정위원만으로도 감정이 가능하면 감정위원회 내에서 일정 인원 이상이 회의체로 감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전문학회에 협력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현재 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가 학회에 추천 협력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음)으로 외부의 감정의를 선정하여 감정 의견을 요청한 뒤 의견서를 받아서 감정위원회에서 감수, 보완 및 의견을 제출한 감정의와 토론을 거쳐 감정서

13) 2017년 전국 진료기록감정 자료에 의하면 신경과는 879건, 정형외과는 944건인 반면, 다른 진료과목은 100건대 전후임.

14) 현재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수준의 임상경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

15) 현재 상임전문심리위원 중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사도 있지만, 임상경험이 특별히 많지 않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의사가 더 많음.



를 작성함.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다수 감정의가 관여된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콘퍼런스 감정과 유사하고, 이를 거쳐 감정서가 서면으로 작성되는 점에서는 일본의 복수감정제도와 유사함.

- 감정위원회는 ‘감정위원회 명의로’ 감정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 외부 감정의와 사이 또는 감정위원회에서 해당 감정에 관여한 위원들 사이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수 의견을 기재함.¹⁶⁾ 감정서 의견에 의문이 있거나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책임 감정위원 등을 감정증인 등으로 신문할 수 있음.
- 감정위원회 소속 감정위원의 성명을 명시할 것인지, 감정위원회가 외부 의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관여한 외부 의사의 성명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
 - 명시하는 안: 소송당사자들이 감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현재 감정병원에 의료감정을 할 때 감정의의 이름은 공개되어 감정의 명의로 감정서가 작성되어 회신되고 있음. 반면 대한의사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을 한 의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음.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에 기피 제도가 있어서 기피의 기회를 차단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명시하지 않는 안: 감정위원들과 감정의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음. 감정의 특성상 당사자 일방에 불리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고, 동료 의사들과의 관계 등으로 가지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음. 명확하고 분명한 의견을 밝히는 감정서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부실해질 우려도 있어 보임(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에 대해 최근 이런 비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 또한 감정위원의 기피, 회피제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 등 마련이 필요할 수

16) 일본의 일부 지방재판소에서 실시하는 복수감정에서는 ‘복수의 의견이 일치하면 당사자의 승복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면 의견 사이의 비교 검토를 통해 당사자의 납득을 얻기 쉬워, 다른 사건에서보다 화해율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있음.

- 관여한 소속 감정위원의 이름은 명시하되, 외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의사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는 안 : 외부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반면 감정위원회 소속 감정위원들의 경우 법원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감정을 하는 위원이므로 명의를 밝혀 감정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익명성 뒤에 숨는다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음.

■ 기대효과

- 법원이 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료감정 절차를 운영할 수 있음. 감정결과를 재판에 직접 사용하는 재판부가 감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고 감정위원회도 법원 소속 기관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감정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음.
- 감정촉탁서 반송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감정서 회신 지연의 문제는 감정위원의 수, 감정의뢰 사건의 수, 외부의 전문학회나 병원, 의사와 어느 정도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감정절차의 경우보다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만일 감정위원 중 업무에 소홀하거나 감정내용을 부실하게 제시, 늦게 제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함.
- 감정위원, 외부 의사 등 여러 전문가가 감정서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복수감정과 유사한 결과가 되어 감정의 충실성,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의료계와 법조계 사이에 감정위원회를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의사와 병원, 의료단체의 감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보았다고 함).

■ 검토되어야 할 내용 등



- 감정위원회에 법률상 명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에 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고(일본의 의사관계소송위원회는 최고재판소 규칙에 소관사무, 조직, 임명절차, 임기, 의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에 관여하므로 소송법상 지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은 적음), 감정예규에 감정위원회를 감정촉탁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위원회가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나, 법원산하의 조직이므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임.
- 인적·물적 시설 마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예우나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학식과 경험을 검증하기 위한 위촉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감정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회의체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함. 소속 감정위원들의 자체 감정에 필요한 간단한 의료장비를 구매하거나 외부 의료기관의 장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만일 그런 여건 마련이 어려운 경우 신체감정은 외부 병원이나 의사에 의뢰하거나, 감정위원은 환자·피해자 등을 진찰, 관찰만 하고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검사 등은 환자·피해자 등이 직접 외부에서 검사한 후 검사결과지(촬영 영상 등)를 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감정위원의 선발방법, 임기, 세부적인 조직구성, 의결방법, 업무수행 결과 평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조직운영 규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¹⁷⁾

라.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가칭)감정위원회 설치방안을 검토·논의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다수가 찬성함(서면으로 의견 조회하여 응답자 8명 중 7명 찬성, 1명은 ‘감정위원회의 비대화, 옥상옥의 권력기관화 및 모든 감정의 공

17) 전문심리위원규칙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경우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임기는 2년, 겸직금지, 인적, 물적 시설의 제공과 업무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 이에 앞서 본 것 정도로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인적, 시간적 한계 등으로 그 외 좀 더 구체적으로 설치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함.
- 이러한 개선방안은 의료감정절차의 큰 틀을 바꾸는 개선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데에는 법원 내부의 논의만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의료단체나 각 학회, 병원이나 의사들 및 현재 감정 업무를 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등의 자리가 필요함.
- 이에 (가칭)감정위원회 설치방안과 같은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또는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의료소송 및 교통·산재 손해배상소송 전문 법관,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 TF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여 위원들이 찬성함(11명 중 출석 10명 모두 찬성).

4. 중장기 개선방안(기타) : 감정병원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 개최

가. 제안배경

▣ 중장기 개선방안 등 감정제도 개선을 위한 초석

- 중장기 개선방안 중 (가칭) 감정위원회의 설치방안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측 의견을 조회하거나 의료기관 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그 외도 실효성 있는 의료감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정병원 및 감정원들, 의료단체 등의 협조가 필요함.

▣ 법조계와 의료계 사이 소통 필요

-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외에는 법원과 병원이나 의사들, 의료단체 등 사이에 직접 소통할 기회나 창구가 없음.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의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법조계와 의료계 사이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음.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음.

- 법원의 입장에서는 감정서가 반송되거나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감정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더라도 감정병원과 직접 소통할 창구가 없어 문제의 원인을 알기 어렵고 개선을 요청하기도 곤란함. 감정에 적극적으로 응할 경제적·비경제적 유인책을 만들려고 하여도 어떠한 대책이 의미가 있는지 법원이 알기 어렵고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움(예컨대 인증평가제도 등).
- 감정병원의 입장에서도 의료감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감정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기회 결여 등으로 감정을 기피하기도 하고, 감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재판부에 직접 물어볼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함. 또한 감정을 한 사건에 관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도 이를 알 방법도 없는 등 감정을 통해 임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험과 지식 등을 얻어 자료화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함.

나. 구체적인 개최방안 등

▣ 개최 주체

-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연락하여 대학병원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안. 법원 전체적으로 행사를 주관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전부 행사를 공지할 수밖에 없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다면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서울 관내 병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고등법원별로 주관하는 안: 고등법원별로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과 연합하여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안.
- 각급 법원이 주관하는 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의료실무연구회'가 있으므로 위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주관하는 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감정병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정도로 참



여자 범위를 정해 개최할 수 있음.

- 검토: 고등법원별, 각급 법원별 주관은 각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개최를 권유하기 어렵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개최방법과 논의할 내용 예시를 전달하고 각 법원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음. 재판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간담회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문 법관(현재 부장 1명, 단독 1명) 외에 대부분 법원의 의료소송 담당 법관이 계속 변경되어 연속성이 없고 현재 논의되는 의료감정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간담회가 현재 소송실무상 당면한 문제에 관한 논의에 한정될 수 있음.

■ 참석 대상

- 병원 측(병원장, 감정의, 법무담당자 등), 법원 측(의료·손배재판장, 재판부 구성원 등), 변호사 측(대한변협,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등)¹⁸⁾
- 실질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측 3인 내외, 변호사 측 1~2명 내외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상함.

■ 간담회에서 논의할 내용 예시

-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 감정인 풀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적정한 감정인 풀 확대 범위(적정한 인원, 자격요건 등과 함께 실제 감정인으로 참여할 의사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 요청)에 관한 의견 교환, 감정인 추천, 신청 등에 협력할 동기 부여
 - 감정병원 소속 의사들이 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18) ▪ 대한의료법학회: 1999. 4. 24. 출범 / 의료법학 발간 / 법원 의료법커뮤니티와 공동세미나 개최 (법학 교수, 법조인들이 주축, 의료인들 포함)
▪ 한국의료법학회: 1992. 6. 19. 구성 / 한국의료법학회지 발간 (의료인들 주축, 특히 현재는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가 주축이라고 함)
▪ 한국의료변호사협회(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2023. 2. 2. 명칭 변경): 2008. 9.경 출범, 2023. 2. 2. 기준 회원 319명 (변호사들로만 구성)



보상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가칭)감정위원회 설치방안과 같은 전문적인 감정기구 등 설치에 관해 그 설치 필요성, 설치방법, 인적·물적 환경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감정제도와 감정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정의들 대상으로 법원에서 교육하는 것에 관해 찬부 의견 및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참석 의사 등 확인
- 향후 법원-의료기관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데 관한 의견 교환

● 감정병원과 변호사 측 의견 청취

- 의료감정제도 전반(감정과목 분류, 감정료, 감정 관련 문서수발, 감정서 작성 등)에 관한 개선의견 청취
- 감정병원이 현실적으로 감정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

● 법원의 요청사항 전달

- 재판부가 원하는 감정서 작성 사례 전달
- 감정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 의료감정인 대상 감정실무연수를 개최할 경우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건설감정의 경우 감정인실무연수를 중앙지방법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음)
- 감정병원과의 소통창구 마련 요청(감정절차 관련 연락할 수 있는 병원의 담당자 지정 등)

● 참고: 수원지방법원이 관내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획한 간담회 주제(코로나 확대로 실제 개최되지는 못함)

- 감정과 관련한 법원의 부탁사항 / 감정촉탁서의 적절한 작성 방법 / 신체 감정과목의 적절한 선택(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구별, 재활의학과 감정의 필요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감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해당과) / 진료기록 감정촉탁 가능 여부(감정과목의 다양, 감정비용) / 감정과 관련한 감정



의의 부탁사항 / 감정의의 의견 청취(당사자들이 감정과 관련하여 업무방해하는 경우 처리 방법)

다.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도 어려워서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는 진행하지 않음
- 다만 각급 법원에 감정병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권장하고, 간담회 개최 시 법원행정처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의결을 하는 것을 제안하여 위원들이 찬성함(11명 중 출석위원 10명, 9명 찬성).

IX. 현장검증제도 개선방안

1. 논의의 배경

가. 논의의 필요성

- 검증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로서 증거조사의 충실화를 위한 제도임. 또한 현장검증을 통해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을 높일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현장검증 시행 건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부각된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검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나. 논의 경과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 원격 영상검증 도입 등



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까지는 반영되지 않음

- 3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 특히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
- 이에 4기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검증 제도 개선방안으로 검증여비 현실화 방안과 원격 영상 검증, 드론을 활용한 사진 촬영 방식의 검증 등 검증 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현장검증 감소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법관 상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2. 현장검증여비 개선방안

가. 검토 배경

- 현장검증 시, 지급되는 검증여비의 액수가 법관 및 직원의 검증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와 비교할 때 적어 현장검증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음.
- 검증여비는 민사소송비용규칙과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되는데, 2008년 이전에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따르지 않고,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검증여비를 산정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마다 검증여비 산정기준이 다르고 동일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별 차이가 발생함
- 이에 현장검증여비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8. 2.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을 제정·시행함.
- 위 지침에 따라 검증여비가 통일적으로 산정되면서 시행 전 대비 여비 감액 현상이 발생함.

나. 관련 규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 ①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 ①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¹⁹⁾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

19) 1983. 4. 6. 대법원규칙 제정 당시부터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음



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
 2023. 6. 15. 개정내용 반영**

[표5. 근무지 내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
 출장인원 1인 기준

전국 법원 공통

구분\출장 소요시간	4시간 이상 소요	4시간 미만 소요	
대중교통이용(자가용 포함)	2만원 지급	1만원 지급	
공용·전용차 이용	1만원 지급	여비지급 없음	거리에 따른 6km당 11 연료대 별도 처리
전용차 배정자	여비지급 없음	여비지급 없음	“
기타경비	해당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의 경우 사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의 예납금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정액을 지급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예납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납부 절차 또는 국고대납절차를 거친 후 [별지3] 여비 등 정산 신청서상에 그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표6. 근무지 외 출장여비 등 지급 기준]

출장인원 1인 기준

전국 법원 공통

원칙	여비규칙【별표 2】에 따른 운임·일비·숙박비·식비·기타경비의 각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지급	
항목	구분	지급기준
운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등 대중교통(자가용 이용포함)	【근무지 외 출장여비 예납금 산정표】에서 정하는 운임 지급
	공용·전용차량 이용	운임 지급 없음. 다만, 도로·공항·항만·주차장 이용료 등의 실비액은 운임으로 지급(연료대 6km 당 1l 계산·처리는 별도)
일비	원칙	1일당 정액일비 2만5천원 지급
	공용·전용차량 이용	위 금액의 2분의 1, 즉 1일당 1만2천5백원 지급
식비	원칙	1일당 정액식비 2만5천원 지급
숙박비	원칙	예납금 산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액 지급
기타경비	원칙	현장검증을 위한 출장 사건 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의 경비를 예납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액을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비목별로 [별지3] 여비 등 정산 신청서에 그 사유 및 내역을 밝혀서 청구하는 경우(기타경비의 현장검증 외의 증거조사 목적인 경우 포함) 위 정액을 초과한 실비액에 대한 지급 가능

■ 요약

- 근무지 내 국내출장(같은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또는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 출장여행 시간 4시간 이상 → 총 20,000원 → 관용차 이용시 총 10,000원(관용차 이용시 10,000원 공제)
 - 출장여행 시간 4시간 미만 → 총 10,000원 → 관용차 이용시 총 0원
- 근무지 외 국내출장
 -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계산



- 일비는 1일당 25,000원, 관용차 이용시 1/2 감액
- 식비는 1일당 25,000원

다. 외국의 경우

1) 일본

- 일본은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여비를 직접 규정, 여비 및 숙박료만 증인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일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실비 보상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2) 독일

- 출장여비 수준은 공무원과 법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라. 검증여비 현실화 방안 검토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현장검증 관련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

■ 가능성

-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제1항은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 ‘위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 제2항은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함
- 증거조사를 위하여 검증현장으로 출장을 하는 경우, 법원 밖에서의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현장방문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부의 담당 법관 및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 또한 일반 행정기관의 출장여비 등은 국고에서 지급되나, 민사소송비용법에



다른 검증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당사자가 부담하기에 출장여비 산정에 있어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그 성격상 타당하지 않음

- 여비와 숙박료 외에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검증여비 현실화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음. 이에 일당 지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민사소송비용법의 위임에 따라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 등의 명칭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됨

■ 문제점

- 근무시간 중 재판업무의 일환으로 현장검증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급여 이외에 보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일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 제기 가능성

2) 법원공무원여비규칙 개정으로 일비, 식비 인상하는 방안

■ 가능성

-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한 일비 25,000원(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23. 4. 27. 개정됨)과 식비 1일 25,000원(1998. 5. 19. 제정 이래 변동 없음)을 인상하는 방안

■ 문제점

-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제정됨
- 최근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비를 2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또한 개정됨
-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만 일비, 식비를 차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어려움



3) 근무지 내 현장검증의 경우에도 식비 지급 방안

▣ 가능성

-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중 제18조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액(4시간 이상 : 20,000원, 4시간 미만 : 1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무지 외 출장 대비 일비 감액 및 식비 미지급됨
- 근무지 내 현장검증의 경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8조를 따르지 않도록 하여 근무지 내·외 구분 없이 여비를 지급하게 한다면, 별도로 일비 및 식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여비 증액 효과가 있음(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도 근무지 외 출장과 같이 모두 50,000원을 지급, 관용차 이용시는 37,500원)

▣ 문제점

- 근무지 내 현장검증의 경우에만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배제할 근거 부족함
- 근무지 내 4시간 미만 현장검증에 대해 식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

3. 원격 영상검증 도입 방안

가. 관련 법령의 경과

▣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에 대한 영상신문 도입

-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 진행 가능(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신설)
- 다만, 증인이 아동복지법위반 등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이거나,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신문 허용



▣ 2016. 3. 29.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감정인에 대한 영상신문 도입

- 증인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신설)
-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제340조 단서 및 제341조 제3항 신설)

▣ 2020. 6. 1.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 도입

-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규칙 제70조 제6항 신설)

▣ 2021. 8. 17.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의 범위 대폭 확대

구분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방식
민사	변론기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1항)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제373조에서 제327조의2 준용)	증인 등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감정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때		



형사	공판준비기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7)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구속 이유 고지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감정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77조에서 증인에 관한 규정 준용)	증인 등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결정	

나. 원격 영상검증의 도입 필요성 여부

- 현장검증의 특성상 원격 영상검증을 도입할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임
- 원격 영상검증을 도입할 경우 현장에 직접 법관 등이 나가지 않아도 되므로 검증이 활성화되고, 재판부가 궁금한 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에도 현장검증을 대신하여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현장을 촬영한 고화질의 동영상 등을 제출하고 있고, 법정에서 동영상 시청, 인터넷상의 위성지도, 거리지도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원격 영상검증을 도입할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신분 확인, 주위의 부당한 영향력 배제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다. 원격 영상검증 도입 시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 현 민사소송법은 검증의 실시 장소,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



고 있지 않음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중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에 ‘현장검증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현장검증을 활용하고 있음
- 다만, 회생사건의 경우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채무자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현장검증이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현장검증과는 차이가 있음

4. 드론을 활용한 사진촬영 방식의 검증 실시

- 최근 현장검증을 실시하면서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검증조서에 반영한 사례가 있음. 상공에서의 촬영을 통해 검증 대상 전체를 한 장의 사진으로 정확히 표상할 수 있어서 기존 카메라 촬영보다 유용하다고 보임
- 드론 촬영 장비를 업무용 기자재로 구입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대전지방법원에서는 법원 예산으로 드론 구입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검증 시 적극 활용 중이라고 함)
-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0g 이상의 드론 장비 사용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 250g부터 2kg 이하인 드론(4종)은 실기시험 없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 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드론 조정 가능
- 현장검증의 경우 검증조서에 붙일 사진의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엄밀히 말하면 민사비용법 제9조에서 정한 ‘기타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실무상 그 실비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예납받고 있지 않음. 드론촬영의 경우 필요한 경우 기타 비용으로 산정하여 예납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5. 그 밖의 현장검증 활성화에 대한 의견



- 현장검증에 갈음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을 제출하거나 위성지도 등으로 갈음할 경우 ① 법원이 사전에 동영상, 사진 또는 위성지도 등의 촬영 및 제출 방법에 대한 권고안(예시)을 제시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제공, ②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당해 동영상, 사진 또는 위성지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이 현장검증에 준하여 이러한 자료를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6. 검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목적

-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최종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현장검증의 감소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

■ 설문조사 기간, 대상자 및 응답자 수

- 2023. 5. 3.부터 2023. 5. 10.까지 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 처장·차장을 제외한 전국 법관(총 3,108명) 대상 현장검증의 감서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48명(14.4%)이 응답

■ 설문조사결과 분석

- 입체적 사진이나 동영상, 위성지도 등의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비율이 63.4%, 현장검증 비용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감비율이 87.3%, 현장검증 비용 증액이 현장검증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비율 또한 73.8% 도출
- 현장검증의 경우에도 장치를 통한 영상검증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4.7%
- 현장검증 실시에 카메라나 드론, 담당인력 등 인적, 물적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8%
- 자세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별지4. 검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



사결과 분석과 같음

7.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논의결과

- 현장검증을 시행하는 경우, 법원 밖 원활한 증거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현장방문 및 조사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법관 및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데 그와 비교해 현행 지침에 따른 현장검증여비가 적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 : 위원 11명 중 9명(1명 미응답, 1명 비동의²⁰⁾)
- 다만, 검토된 현장검증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모두 문제점이 존재하여 그중 하나의 방안을 정해 추진하는 내용의 의결은 하지 않기로 함
-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검증 대상 전체를 상공에서 촬영하여 정확하면서도 쉽게 실제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드론 장비 구입 및 관련 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함

20) 재판업무인 증거조사로서 현장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소송관계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



별지1. 현재 신체감정촉탁서 양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신체 감정촉탁서

수 신 경찰병원 병원장
(전화 :)
제 목 신체감정촉탁

이 법원 2022가합 손해배상(의)

사건에 관한 아래 사람의 신체 감정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귀 병원 소속 의사를 지정하여 촉탁하오니 그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2부를 첨부할 것)

아 래

1. 감정 대상자 : 1) 홍길동
2. 감 정 사 항 : 별지와 같음
3. 첨 부 서 류 : 2022. 5. 4.자 원고 제출 신체감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4. 신청인 연락처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Tel. 02-5 -2)
5. 상대방 연락처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Tel. 02-5 -9)

2023. 1. 4.

재 판 장 판 사

◇ 주 의 사 항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감정 대상자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감정촉탁회보에는 반드시 병원장의 기명날인을 하여 주십시오.
3.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4.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판독지 등을 첨부하시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 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 등 감정에 기초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5. 불확실한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감정사항의 각 항목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6.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7. 신체감정료로 금 400,000원이 예납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중으로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8. 신체감정료와 별도로 발생한 입원비·진찰비·검사비 등의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직접 납부받은 경우 해당 상세내역서를 감정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감정대상자 정보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630100-1
주 소 58154 서울 마포구 갑을리 을병길
연 락 할 곳

선정한 감정의사 명단

감 정 과 목		감 정 의 사	비 고
주과목	신경외과(척추)	김을순	원고 신청(22.05.04.자)

※ 문의사항 연락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법원주사보
전화 530-1738 (동관11층 합의1과)
팩스 e-mail



별지2. 법관 대상 의료감정제도 단기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응답자의 현재 직책은 무엇인가요? (복수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주된 직책을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책	합의부 재판장	단독 재판장	합의부원	비재판보직
응답자수	97	147	51	33
응답비율(%)	29.6	44.8	15.5	10.1

응답자의 법관 재직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책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자수	26	43	73	86
응답비율(%)	7.9	13.0	22.1	26.1	30.9

법관 재직 중 재판장을 담당한 적이 있나요?

직책	있다	없다
응답자수	301	27
응답비율(%)	91.8	8.2

소송 중 진행되는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이하 “의료감정” 이라 합니다) 절차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자수	272	56	3	0
응답비율(%)	82.2	16.9	0.9	0.0	0.0

의료감정 절차 지연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선택가능)

절차지연 원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촉탁병원 및 전문의의 수 부족	감정의의 에 대한 경제적 보상 부족	감정의의 감정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부족	재판부의 의료감정 절차에 대한 관리 소홀	감정의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부족	당사자(소송 대리인 포함)의 투망식 감정신청	기타
응답자수	222	283	50	32	145	68	16
응답비율(%)	67.1	85.5	15.1	9.7	43.8	20.5	4.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이하 “감정예규”라 합니다)는 의료감정을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감정촉탁기관을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감정 담당 의사의 자격을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의료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의 풀(pool)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의료감정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정촉탁기관 또는 정인의 풀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 공감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31	129	39	14	12	6
응답비율(%)	39.6	39.0	11.8	4.2	3.6	1.8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연구·검토한 방안 중 감정촉탁기관의 범위를 ‘병원(의원 제외), 치과병원(치과의원 제외), 전문병원’ 단위(단,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있는 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42	134	21	20	11	1
응답비율(%)	43.2	40.7	6.4	6.1	3.3	0.3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연구·검토한 방안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개인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18	127	35	29	19	2
응답비율(%)	35.8	38.5	10.6	8.8	5.8	0.6

감정예규는 신체감정료의 경우 과목당 4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의 경우 과목당 60만 원으로 하되,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하여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정예규상의 기본 의료감정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시는지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206	100	16	7	0	1
응답비율(%)	62.4	30.8	4.8	21.	0.0	0.3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아래 방안에 따라 의료감정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음
- <표 1> 구체적인 개편안(예시) (본문의 개편안과 같음. 생략)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표 1>과 같이 기본 질의문항 수를 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기본 감정료를 책정하고, 기본 질의문항 수를 초과하는 질의문항에 대해서는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감정료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감정료 부과 체계 개편에 공감하시는지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	약간 공감	보통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48	130	18	10	10	12
응답비율(%)	45.1	39.6	5.5	3.0	3.0	3.7

<표 1>에서 기재한 의료감정료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문항 수(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모두 20문항)와 기본 감정료(현행 예규와 같이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감여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기타
응답자수	113	181	31
응답비율(%)	34.8	55.7	9.5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아래 방안에 따라 의료감정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음
 - <표 1> 구체적인 개편안(예시) (본문의 개편안과 같음. 생략)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표 1>과 같이 기본 질의문항 수를 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기본 감정료를 책정하고, 기본 질의문항 수를 초과하는 질의문항에 대해서는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감정료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감정료 부과 체계 개편에 공감하시는지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	약간 공감	보통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48	130	18	10	10	12
응답비율(%)	45.1	39.6	5.5	3.0	3.0	3.7

<표 1>에서 기재한 의료감정료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문항 수(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모두 20문항)와 기본 감정료(현행 예규와 같이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감여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기타
응답자수	113	181	31
응답비율(%)	34.8	55.7	9.5

<표 1>에서 기준문항을 초과하는 질의문항 수가 1~40개인 경우(총 질의문항 수가 21~60개인 경우)에 추가 문항 1개당 부과하는 초과 감정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예시] 진료기록감정의 총 질의문항 수가 40개이고, 추가 문항 1개당 초과 감정료를 3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 총 감정료는 120만 원 [= 60만 원 + (3만 원 × 20개)] (초과 감정료별 총 감정료 개별 예시는 아래 표 참조)

	추가 1개당 초과 감정료	전체 질의문항 수에 따른 총 감정료 산출액				
		20문항	30문항	40문항	50문항	60문항
①	1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②	2만	60만	80만	100만	120만	140만
③	3만	60만	90만	120만	150만	180만
④	4만	60만	100만	140만	180만	220만
⑤	5만	60만	110만	160만	210만	260만

초과 감정료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응답자수	12	54	91	13	127	25
응답비율(%)	3.7	16.8	28.3	4.0	39.4	7.8

<표 1>에서 기준문항을 초과하는 질의문항 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총 질의문항 수가 61개가 되는 경우), 추가문항 1개당 부과하는 초과 감정료를 Q9의 금액보다 더 높게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시: 추가 질의문항 수가 1~40개인 경우에는 개당 3만 원의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고, 4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개를 초과하는 문항 수에 대하여 개당 5만 원의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는 방안]

공감여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기타
응답자수	202	98	18
응답비율(%)	63.5	30.8	5.7

별지3.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대상 의료감정제도 단기개선방안 관련 설문 조사결과 분석

소송 중 진행되는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이하 “의료감정” 이라 합니다) 절차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266	43	3	1	2	0
응답비율(%)	84.4	13.7	1.0	0.3	0.6	0.0

의료감정 절차 지연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 선택 가능)

절차지연 원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촉탁병원 및 전문의의 수 부족	감정의의 대한 경제적 보상 부족	감정의의 감정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부족	재판부의 의료감정 절차에 대한 관리 소홀	감정의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부족	당사자(소송 대리인 포함)의 투망식 감정신청	기타
응답자수	230	132	61	95	184	34	10
응답비율(%)	73.0	41.9	19.4	30.2	58.4	10.8	3.2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이하 “감정예규” 라 합니다)는 의료감정을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감정촉탁기관을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감정 담당 의사의 자격을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의료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의 풀(pool)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의료감정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의 풀을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 공감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72	101	19	11	10	2
응답비율(%)	54.6	32.1	6.0	3.5	3.2	0.6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연구·검토한 방안 중 감정축탁기관의 범위를 ‘병원(의원 제외), 치과병원(치과의원 제외), 전문병원’ 단위(단,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있는 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75	101	23	10	5	1
응답비율(%)	55.6	32.1	7.3	3.2	1.6	0.0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연구·검토한 방안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개인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하시나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52	93	21	31	17	1
응답비율(%)	48.3	29.5	6.7	9.8	5.4	0.3

감정예규는 신체감정료의 경우 과목당 4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의 경우 과목당 60만 원으로 하되,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하여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정예규상의 기본 의료감정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시는지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	보통이다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95	109	57	28	26	0
응답비율(%)	30.2	34.6	18.1	8.9	8.3	0.0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아래 방안에 따라 의료감정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음
 - <표 1> 구체적인 개편안(예시) (본문의 개편안과 동일)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표 1>과 같이 기본 질의문항 수를 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기본 감정료를 책정하고, 기본 질의문항 수를 초과하는 질의문항에 대해서는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감정료 부과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감정료 부과 체계 개편에 공감하시는지요?

공감여부	매우 공감	약간 공감	보통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08	121	51	19	15	1
응답비율(%)	34.3	38.4	16.2	6.0	4.8	0.3

<표 1>에서 기재한 의료감정료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문항 수(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모두 20문항)와 기본 감정료(현행 예규와 같이 신체감정 40만 원, 진료기록감정 60만 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감여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기타
응답자수	200	105	10
응답비율(%)	63.5	33.3	3.2

<표 1>에서 기준문항을 초과하는 질의문항 수가 1~40개인 경우(총 질의문항 수가 21~60개인 경우)에 추가 문항 1개당 부과하는 초과 감정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예시] 진료기록감정의 총 질의문항 수가 40개이고, 추가 문항 1개당 초과 감정료를 3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 총 감정료는 120만 원 [= 60만 원 + (3만 원 × 20개)] (초과 감정료별 총 감정료 개별 예시는 아래 표 참조)

	추가 1개당 초과 감정료	전체 질의문항 수에 따른 총 감정료 산출액				
		20문항	30문항	40문항	50문항	60문항
①	1만	60만	70만	80만	90만	100만
②	2만	60만	80만	100만	120만	140만
③	3만	60만	90만	120만	150만	180만
④	4만	60만	100만	140만	180만	220만
⑤	5만	60만	110만	160만	210만	260만

초과 감정료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기타
응답자수	71	86	80	11	55	12
응답비율(%)	22.5	27.3	25.4	3.5	17.5	3.8

<표 1>에서 기준문항을 초과하는 질의문항 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총 질의문항 수가 61개가 되는 경우), 추가 문항 1개당 부과하는 초과 감정료를 Q9의 금액보다 더 높게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시: 추가 질의문항 수가 1~40개인 경우에는 개당 3만 원의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고, 4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개를 초과하는 문항 수에 대하여 개당 5만 원의 초과 감정료를 부과하는 방안]

공감여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기타
응답자수	195	113	7
응답비율(%)	61.9	35.9	2.2



별지4. 검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법관 대상 설문조사결과 분석

현재의 직책에 따른 응답자 분포

직책	합의부 재판장	단독 재판장	합의부원	비재판보직
응답자수	150	184	77	35
응답비율(%)	33.6	41.3	17.3	7.8

법관 재직 경력에 따른 응답자 분포

재직 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응답자수	28	61	90	122	147
응답비율(%)	6.3	13.6	20.1	27.2	32.8

재판장 경험 여부 응답자 분포

재판장 담당 경험	있음	없음
응답자수	411	35
응답비율(%)	92.2	7.8

현장검증 채택 비율 응답자 분포

현장검증 채택여부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70% 이하	70% 초과 90% 이하	90% 초과
응답자수	286	84	46	20	11
응답비율(%)	64.0	18.8	10.3	4.5	2.5

현장검증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 응답자 분포(복수 선택 가능)

채택하지 않는 이유	입체적 사진이나 동영상, 위성지도 등의 증거 제출이 가능하여 검증의 필요성이 적어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경우, 다른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검증여비가 적어서	기타
응답자수	366	326	173	22
응답비율(%)	82.6	73.6	39.1	5

입체적 사진이나 동영상, 위성지도 등의 증거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충실한 증거조

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여부 응답비율

공감여부	매우 공감	약간 공감	보통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01	182	90	44	20	9
응답비율(%)	22.6	40.8	20.2	9.9	4.5	2.0

현장검증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으로 인하여 법관과 직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므로 그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장검증은 법관 본연의 업무에 속하므로 소송관계인이 그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함. 현장검증 비용의 증액 필요성 공감여부 응답비율

공감여부	매우 공감	약간 공감	보통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270	115	34	11	8	3
응답비율(%)	61.2	26.1	7.7	2.5	1.8	0.7

현장검증 비용 증액이 현장검증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공감여부 응답비율

공감여부	매우 공감	약간 공감	보통	약간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기타
응답자수	182	148	61	28	23	5
응답비율(%)	40.7	33.1	13.6	6.3	5.1	1.1

현장검증 실시에 카메라나 드론, 담당인력 등 인적, 물적 시설의 확충이 필요성 응답비율

필요성 여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비용증대는 법원이 부담	필요하다. 그에 따른 비용증대는 소송관계인이 부담	필요하지 않다	기타
응답자수	111	308	21	8
응답비율(%)	24.8	68.8	4.7	1.8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변론준비기일,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현장검증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장치를 통한 영상검증 도입의 필요성 응답비율

필요성 여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기타
응답자수	183	244	19
응답비율(%)	41.0	54.7	4.3

영상검증 도입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요한 이유>

- 검증현장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필요하다.
- 영상검증의 경우 녹화영상 제출과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반론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녹화영상의 경우 녹화자가 어느 정도 편집이나 화면 배치 등이 가능한 반면 영상검증은 이와는 달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실익이 있다. 아울러 현장검증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실제 현장을 오감으로 파악하는 현장검증의 취지상 영상검증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입체적 사진이나 동영상, 위성지도 등의 증거 제출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